

日・朝關係에서 僞使의 시대

伊藤幸司

머 리 말

1. 위사의 발생과 전개—15세기 전반의
통교 통제와 하카타(博多)상인
 - 1) 위사의 初見
 - 2) 世宗期の 통교 통제책
 - 3) 구주탐제 시부카와(澁川)씨와의 제휴
 - 4) 오오토모(大友)씨와의 제휴
 - 5) 중앙정권과의 제휴
 - 6) 소우 사다모리(宗貞盛)의 하카타 진출과 하카타 상인
 - 7) 癸亥約條의 성립과 그 영향
- 8) 새로운 통교권의 모색
 - 9) 하카타 상인 이외의 통교자들
2. 위사통교의 확대와 변용—15세기 후반
쓰시마 소우씨와 하카타 상인
 - 1) 1450년대 이후의 深處倭 명의의 통교권
 - 2) “조선遣使碁”의 실패와
쓰시마 소우씨・하카타 상인
 - 3) 16세기—17세기 전반의 위사 통교
맺음말

【참고문헌】

【토론촉취문】

머 리 말

“僞使”는 14세기 말기~17세기 전반의 日・朝關係를 實態的으로 해명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연구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조선측 사료에서 “中間詐僞者”,¹⁾ “中間奸人”²⁾ 등으로 호칭되었던 위사의 본질을 판별하고, 그 창출 논리를 명확히 하지 않는 한 새로운 중세 日・朝關係사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³⁾

1) 《성종실록》 1년 9월 병자조.

2) 《중종실록》 4년 4월 계유조.

3) 橋本雄씨는 情報論의 시점에서 위사 문제를 분석하는 가운데 위사의 기법을 소개하면서 위사 認定 작업의 방식에 대해서도 서술했으며[橋本 2004]. 그 성과는 본고에서 참고했다.

본고는 “조선 遣使 浬”와 같은 특정한 통교 현상과 개별적인 통교 名義마다 행해져 왔던 지금까지 위사 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하여 거기에 新知見을 교차시키면서 위사의 관점에서 14세기 말~17세기 전반의 일·조관계사를 체계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특히, 연구가 급속히 심화되고 있는 삼포의 난(1510) 이전의 日·朝관계, 즉 15 세기의 위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고찰에 앞서 우선 위사의 정의를 확인해 두고 싶다. 위사란 “제3자가 무역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어떤 사람(실재 하지 않아도 좋다)의 명의를 속인 것으로 외국과 통교한 거짓의 외교 사절”이다[橋本2003, 151쪽]. 그러나 단순히 위사라고 하더라도 그 통교 형태는 매우 복잡하여 여러 가지 모델 패턴이 있다. 다음에 잠정적이긴 하지만, 당해기 일조통교에 보이는 통교 모델 패턴을 두겠다.

【日·朝通交의 모델 패턴】

- I. 眞使
 - II. 眞使便乘型 ※진사이기 때문에 위사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내실이 순수하지 않다.
제3자가 진사에 편승하여 통교
 - III. 淸부통교형 ※순수하게 통교무역을 하청받고 있는 경우 위사라고는 할 수 없지만,淸부인의 부정통교가 가능
통교명의인이 제3자에게 통교무역을 하청주어 통교(통교명의인에게 일정의 주체성이 존재)
 - IV. 名義借通交型
제3자가 통교 명의인에게 명의를 빌린 통교(항상적으로 명의를 빌리는 것은 아님)
(통교 명의인의 주체성은 희박하지만, 통교 실패는 파악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이익을 흡수?)
 - V. 名義讓渡通交型
제3자가 통교 명의인으로부터 통교권을 항상적으로 양도받아 통교(통교 명의인은 어느 정도 이익을 흡수)
 - VI. 通交名義詐稱型
제3자가 실재하는 통교 명의인의 명의를 마음대로 사칭하여 통교
 - VII. 有力者名義詐稱型
제3자가 실재하는 유력자(통교력 없음)의 명의를 마음대로 사칭하여 통교
 - VIII. 架空名義詐稱型
제3자가 가공인물(유력자를 상기시키는)의 명의를 사칭하여 통교

IX. 架空國家型

제3자가 가공국가의 사절을 사칭하여 통교

유형 I 은 통교명의인과 실제의 파견 주체가 일치하는 문제가 없는 사절이다. 유형 II ~ IV 는 이른바 순수한 위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실태의 일부에 위사적 통교수법을 이용하고 있어 말하자면 회색 존의 통교형태라고 할 수 있다. 유형 V ~ IX 는 완전한 위사이다. 이와 같이 유형 번호가 커짐에 따라 통교명의인의 주체성이 서서히 약해져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종래에 위사 파견의 주요한 세력으로서 쓰시마(對馬) 소우씨(宗氏)와 하카타(博多)상인의 존재가 지적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특히 하카타 상인의 동향에 주목하여 고찰을 진행하겠다. 본고의 구성을 보면, 우선 제1장에서는 위사가 발생하여 전개된 15세기 전반의 日・朝관계에 대해, 특히 世宗期의 대일통교 통제책과 하카타 상인의 대응에 주목하여 고찰했으며, 제2장에서는 위사 통교가 확대된 15세기 후반의 日・朝관계에 대해 주로 深處倭 명의의 통교 실태 및 하카타 상인과 쓰시마 세력의 제휴에 대해 고찰하겠다. 그리고 끝으로 동아시아 통교권 안에서 위사의 역사적 위치에 대해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한다.

1. 위사의 발생과 전개－15세기 전반의 통교 통제와 하카타(博多)상인－

1) 위사의 初見

조선왕조는 건국 이후 왜구 회유정책을 시행하여 경제적인 이익 供與에 대한 반대급부로 왜구를 평화로운 통교자로 변질시키는 것에 성공했다. 그 결과 각종 계층의 많은 일본측 통교자가 조선에 도항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하에 이미 14세기 말기부터 통교명의와 파견 주체가 괴리되는 사절이 등장하고 있다[田村, 1972].⁴⁾ 위사의 初見은 1397(태조6)년 6월에 나타난 “日本九州節度使 源了俊” 명의의 사절이다.⁵⁾ 구주 절도사 源了俊이라는 것은 九州探題로서 무로마치(室町)막부의 九州 경영에 진력하

4) 초기의 위사에 대해서는 [田村1972]의 성과로 얻은 것이 많다. 다만, 田村씨의 고찰은 위사와 유사한 사례를 많이 제시하기는 했지만, 체계적인 고찰이라는 점에서는 불충분하다.

5) 《태조실록》 6년 6월 신축조.

여 왜구 대책이나 피로인 송환을 비롯한 활발한 조선 통교를 전개한 이마가와 료순(今川了俊)을 나타내고 있지만[川添1996, 제 5 장], 료순은 1395(應永2)년 8월에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滿)에 의해 탐제직을 파면 당했다. 료순의 뒤를 이어 구주탐제가 된 시부카와 미쓰요리(澁川滿頼)가 하카타에 도착한 것은 다음 해 4월의 일이다. 6월의 료순 使送은 시부카와씨의 探題 착임 후에 행해지고 있어 분명한 위사라고 할 수 있다. 시부카와 미쓰요리가 처음으로 조선에 통교한 것은 1397(태조6)년 12월의 “日本關西道九州探題源道鎮” 명의 사절이다[川添1996, 제6장]. 아마도 앞의 료순 使送은 이마가와 료순 밑에서 실제적인 통교 무역을 담당하고 있던 세력 아니면, 새롭게 탐제로서 착임한 시부카와 미치요리에 의해 창출된 것이라고 추측된다(유형 VI).

2) 世宗期の 통교 통제책

조선왕조 초기 평화로운 통교자가 된 왜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供與해 나간다고 하는 왜구회유책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려 조선에 대한 왜구는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조선에 도항하는 왜인이 증대하는 한편, 그에 동반한 조선측의 경제적 부담은 방대화되어 국가 재정을 압박했다. 때문에 1419(세종1)년의 己亥東征(應永의 外寇)이후, 조선 정부는 일본측 통교자의 도항을 서서히 규제하게 되었다. 다음의 일람표는 나카무라 히데타카(中村榮孝)씨의 견해에 따라[中村1965, 제11장], 書契·文引에 의한 대일 통교 통제책의 변천을 정리한 것이다. 이후의 고찰은 이 일람표를 참고로 하면서 진행하기로 한다.

그런데, 世宗기에 정비된 통교 통제는 그때까지 비교적 자유로웠던 일본측 통교자의 조선 도항에 대해서 서계나 문인이라고 하는 외교 문서의 소지를 의무화 하는 것으로 도항자수의 억제·관리와 그 준별을 꾀하는 것이었다. 특히, 日・朝통교의 중요한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쓰시마도주에게 도항증명서가 되는 문인을 발행받는 문인의 制는 日・朝통교에서 쓰시마도주 소우씨의 중요성을 확정적으로 하였고, 이후의 日・朝통교의 기본적 틀로서 19세기(메이지초기)까지 유지된 시스템이다. 이러한 世宗期の 통교 통제, 특히 조선 통교를 지향하는 쓰시마도주 소우씨 이외의 일본측 통교자에게는 조선과의 통교 무역을 수행하는 데에 매우 큰 장애가 될 수 있는 제도였고, 그 대응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 절 이후에서는 우선 조선과의 통교 무역을 강하게 지향했던 하카타 상인에 초점을 맞추어⁶⁾ 그들이 이 통교 통제책에 어떻

6) 통교 통제책과 쓰시마 세력의 관계에 대해서는 中村榮孝씨・長節子씨・黒田省三씨・荒木和憲씨의 연구 업적이 있다[권말의 참고문헌 참조][中村 1965][長 1987][黒田 1971][荒

게 반응하고 있었는지 고찰해 보겠다.

【조선 정부의 대일 통교 통제책—書契・文리에 의한 통제를 중심으로—】

시 기	내 용	전 거
태종 7년(1407)7월	興利倭船은 경상도의 도만호가 있는 포소에만 입항하고, 渠首(거주의 유력자)의 행장을 소지해 도항할 것.	《태종실록》, 7년 7월 무인조
태종 14년(1414)8월	日本國王・對馬島・大內殿・少貳殿・九州節度使 등 10곳의 倭使 이외의 도항을 금지함.	《태종실록》, 14년 8월 정미조
세종 1년(1419)6월	己亥東征(應永의 外寇)	
세종 1년(1419)冬	九州의 諸氏は 구주탐제의 서계를 받아 도항할 것(書契에 의한 통제)	《세종실록》, 2년 7월 임신조
세종 2년(1420)윤1월	쓰시마내의 도항자는 쓰시마주의 書契를 받아 도항할 것.	《세종실록》, 2년 윤1월 임진조
세종 6년(1424)8월	구주탐제의 관직명 시부카와 요시토시(澁川義俊)명의로 도항자 증대를 위해 시부카와 요시토시와 세건선 2척을 정약하고 그 서계에 새로 만든 圖書를 붙일 것.	《세종실록》, 6년 12월 무오조
세종 8년(1426)5월 이전	宗貞盛이 使送船・興利船에 도주 문인을 발급하고 이것을 소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접대하지 않도록 李藝에게 요청.	《세종실록》, 8년 5월 갑인조
세종 13년(1431)11월	통신왜인 이외에 단지 행장만을 가지고 왕래하는 사람은 경기 지방에 들어 보내지 않도록 한다.	《세종실록》, 13년 11월 기묘조
세종 16년(1434)4월	宗貞盛 서계를 가진 도항자의 증대를 위해 宗貞盛이 서계의 형식에 의한 접대의 우열을 구별토록 요청.	《세종실록》, 16년 4월 무신조
세종 17년(1435)9월	受圖書人과 쓰시마주 문인을 휴대하고 도항할 것(문인에 의한 통제가 조직적으로 운용되기 시작).	《세종실록》, 17년 9월 정축조
세종 18년(1436)윤6월	쓰시마 및 諸處의 사송인은 쓰시마주 문인을 소지해 도항하고 문인에는 배의 대소, 使者・승무원의 명목을 써둘 것.	《세종실록》, 18년 윤6월 신묘조
세종 20년(1438)10월	문인의 制에 관한 약조 확립	《세종실록》, 20년 10월 기사조

세종 21년(1439)2월	일본국왕·管領武衛・大内殿・菊池殿의 사인, 이전에 통신한 사람이 친하게 내조할 경우, 井大郎과 같이 성심 귀순하는 사람은 문인의 제를 적용하지 않음.	《세종실록》, 21년 2월 을묘조
세종 21년(1439)4월	諸處의 使人에게는 위조·개찬 서계가 많기 때문에 도항자의 진위를 검토하고 나서 문인을 발급하도록 요청.	《세종실록》, 21년 4월 갑진조
세종 21년(1439)10월	魚・鹽의 상매선은 문인만으로 도항할 수 있지만 급료・과해량은 지급하지 않고, 受圖書인의 문인소지의 장려할 것.	《세종실록》, 21년 10월 병신조
세종 21년(1439)10월	宗貞盛 圖書를 표시한 서계의 샘플을 三浦에 분치하고 도항자의 서계와 조합 검사하여 위조·개찬 서계가 있으면 접대하지 않고 송환할 것.	《세종실록》, 21년 10월 경자조
세종 22년(1440)1월	위조·개찬 서계를 소지해 포소에 내항하는 사람의 취급이 결정.	《세종실록》, 21년 10월 을미조
세종 25년(1443)	계해약조 성립.	
성종 2년(1471)	일본으로부터의 모든 도항자는 쓰시마주 문인을 소지하여 도항할 것.	《해동제국기》, 「조방응접기」

3) 구주탐제 시부카와(澁川)씨와의 제휴

1419(세종1)년의 己亥東征(應永의 외구) 이후, 日・朝 통교의 場에 쓰시마를 대신해 대두한 것은 九州探題 시부카와(澁川)씨였다[田中1959, 307-308쪽][川添1996, 205-210쪽]. 쓰시마 토벌이 행해졌던 연말, 조선 정부는 큐슈의 諸氏에 대해 九州探題의 서계를 받아 도항할 것을 정하고 있다. 조선이 이마가와 료순 이래의 큐슈 지역의 통제자 시부카와씨에 대해 증대하는 일본측 통교자의 도항 규제를 기대했던 것이다. 당시 큐슈에서 探題의 정치력은 미약하였고, 시부카와씨가 큐슈 지역의 조선 도항자를 규제하는 실력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부카와씨에 대한 조선측의 기대는 과도하게 평가된 것이었다. 조선측은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쓰시마내의 諸氏에 대해서도 도주의 서계를 받아 도항하는 것을 정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 이른바 서계에 의한 통교 통제의 그물망이 주요한 통교자들에게 적용된 것이다. 그 때문에 단순한 무역을 진행하는 왜인의 통교는 현저하게 불리하게 되었고, 九州探題 시부카와씨가 매우 유리한 통교를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1423(세종5)년, 조선에 류큐국(琉球國)사송인이라고 칭하는 사실이 나타났지만, 그들의 소지한 서계・圖書・객인은 어느 쪽

도 류큐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물의 수수를 거부한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유형Ⅵ).⁷⁾ 管見한 바에 의하면, 이것이 僞琉球國王使의 처음이다. 이 시기는 쓰시마·하카타 상인들이 眞使의 琉球國王使를 하청받는 형태의 통교가 나타나기 이전에 해당한다[田中1975, 307-308쪽]. 이 시기에 돌연 僞琉球國王使의 형태로 통교를 한 배경에는 서계에 의한 통교 통제에 영향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琉球國王使는 시부카와씨나 소우씨가 발행하는 서계에 의한 통교 통제를 받지 않는 통교 명의이며, 통제에 의해 불리를 받은(또는 받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창출된 것이라고 추측한다. 이와 같이 서계에 의한 통교 통제는 후에 적용되는 문인의 制에는 미치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유효성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시부카와씨는 조선측의 통제책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平滿景 등 탐제 관하의 사람들과 함께 빈번한 조선통교를 실시했다. 그러나 수년 후, 日本回禮使 朴安臣이 시부카와 요시토시에 대해서 “... 그렇지만, 1년 동안(1424)使人 혹은 20餘行에 이른다. 어찌 모두 閣下의 사인이겠는가. 모두 興利를 청하는 사람을 이끌고 있다.”⁸⁾고 항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내실은 “흥리를 청하는 사람”(=하카타 상인)이 전개하는 무역 활동이었다. 즉, 본래라면 심각한 통교 규제를 받아야했을 하카타 상인은 시부카와씨 명의의 통교를 하청받거나, 또는 명의를 빌리는 것으로 스스로가 욕구하고 있던 무역 활동을 유리하게 충족시키고 있었던 것이다(유형Ⅲ, 유형Ⅳ). 물론, 시부카와씨 측에게는 스스로의 특별한 조선 통교권을 기동으로 삼아 구심력을 획득한다고 하는 이유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1424(세종6)년, 조선 정부는 시부카와 요시토시와의 사이에서 탐제사절의 통교는 春秋 2번이라는 통교 제한을 설정하고 탐제사절과 단순한 무역자(하카타 상인)를 구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다음 해 7월 무렵, 시부카와 요시토시는 쇼니 미치사다(少貳滿貞)·키쿠치 카네토모(菊池兼朝)에 의해 공격받아 몰락하였고[本田1988], 시부카와씨 일족은 분산되어 시부카와 미치요리는 상경, 요시토시는 치쿠고노쿠니(筑後國)에 칩거하였다[川添1978].

九州探題 시부카와씨를 이용한 통교를 전개함으로써 서계에 의한 통제를 회피할 뿐만 아니라, 매우 유리한 무역을 전개하고 있던 하카타 상인에게 탐제사절선의 제한, 그리고 그 후의 탐제 몰락은 큰 실망감을 주었다. 그렇다면 그 후의 하카타 상인은 어떻게 하여 통교 통제를 회피하려고 시도한 것일까.

첫째는 시부카와씨(道鎮[滿賴]·義俊·滿直)명의 사절의 계속 파견이라고 하는 수

7) 《세종실록》 5년 1월 병술조.

8) 《세종실록》 6년 12월 무오조.

단이다(유형Ⅶ). 이미, 하카타에서 시부카와씨의 존재는 없었지만, 이전부터 시부카와씨 명의를 통교를 행하고 있던 하카타 상인은 시부카와씨 몰락에 대한 정보를 조선측에 은닉하는 것으로 그 통교권을 유지했다. 이 형태의 위사는 시부카와씨 몰락 후 얼마 되지 않은 시기부터 등장하고 있다⁹⁾. 그러나 전년에 시부카와씨 자신의 통교가 조선측에 의해 제한되어 이미 日・朝 통교상에서 시부카와씨의 우위성이 붕괴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부카와 명의를 통교 형태를 계속하는 것만으로는 이전과 같은 빈번한 무역은 바랄 수 없었다. 거기서 새로운 통교권의 확대가 모색되었다. 그것이 소우킨(宗金)의 사례에 확인할 수 있는 하카타 상인의 受圖書人化이다. 九州探題와 밀접하게 관계하며 조선 통교를 실시하고 있던 소우킨은 자신이 통교의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던 시부카와씨의 몰락을 본 직후, 조선에 圖書의 하사를 요청해 受圖書人으로서 독자적인 통교권을 확립하고 있었다[佐伯1999, 105-106쪽].

4) 오오토모(大友)씨와의 제휴

시부카와씨 몰락 이후, 조선 통교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에 하카타 상인이 가장 바라고 있었던 것은 시부카와씨를 대신할 유력자와 제휴해 그 통교 무역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측의 도항자에 대한 대응으로서 서계에 의한 통제에 가세해 통교력이 없는 하카타 상인과 같은 왜인의 단독 통교는 접대가 거부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¹⁰⁾ 그러므로 그들은 조선측도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유력자에 대한 존재를 간절히 바랐다. 시부카와씨 몰락 후의 하카타는 쇼니씨(少貳氏)・오오우치씨(大内氏)・오오토모씨(大友氏)등의 守護大名에 의해 쟁탈전이 반복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을 배제하여 영유 하고 있던 사람은 없었다[佐伯1978]. 그러나 1429(永享1)년 오오토모 모치나오(大友持直)가 하카타 오키노하마(息浜)의 회복에 성공했다. 오오토모씨가 영유 한 오키노하마는 《海東諸國紀》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하카타 무역 상인이 집주하고 있어 당시 하카타에서 무역 활동의 핵심지였다[佐伯1987, 440-441쪽]. 더욱이 시부카와씨 몰락 후, 시부카와씨가 보유하고 있던 서계 발급권은 분산되었고, 오오토모씨는 佐志殿이나 志佐殿과 함께 그 발급권을 조선측으로부터 묵인되고 있던 유력자였다[中村1965, 453쪽]. 소우킨(宗金)을 비롯한 하카타 상인의 입장에서는 조선측으로부터 “大友殿”이라고 불려지고, 게다가 서계에 의한 통제의 근간이 되는 서계 발급권도 가지고 있는 오오토모씨와의 밀접한 제휴는 당연한

9) 《세종실록》 7년 9월 을묘조.

10) 《세종실록》 16년 1월 경자조.

귀절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1428(세종10)년말에 재빨리 소우킨이 오오토모 모치나오를 위해서 조선에 田犬 2척을 청구하고 있는 것¹¹⁾은 상징적이다. 다음 해 7월, 오오토모 모치나오는 처음으로 조선에 사절을 파견해¹²⁾ 이후 통교무역을 계속했다.¹³⁾

이와 같이 오오토모씨의 조선 통교 개시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 오키노하마의 획득에 기인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오키노하마는 오오토모 領國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카시이(香椎)·시마(志摩)군과 함께 멀리 떨어진 곳의 영토로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오토모씨에 의한 오키노하마 지배는 오오우치씨가 수하의 가신을 대관에 직접 임명해 전개한 하카타 지배[佐伯1985]만큼 강력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당초 오오토모씨의 오키노하마 지배를 담당한 대관에는 하카타 상인 소우킨이 임명되고 있었다[佐伯1996, 17-18쪽]. 이러한 오오토모씨와 오키노하마의 관계를 고려하면 오오토모씨의 조선 통교에 대한 지향성은 스스로 강력한 주도권을 가지며 직접 전개했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면에서 하카타 상인에 맡겨졌을 것이다. 실제로 이전 시부카와씨 명의의 청부 및 명의를 빌린 통교 형태가 오오토모씨와 하카타 상인의 사이에서도 행해지고 있었다고 추측된다(유형Ⅲ, 유형Ⅳ).

그런데, 하카타 오키노하마를 영유한 오오토모 모치나오이기는 했지만, 1432(永享4)년 大守護 억압책을 취한 무로마치막부(足利義教)가 오오토모家 家督 상속에 간섭하고, 오오토모씨 후계자는 치카즈나(親綱)(모치나오[持直]의 사촌 형제에 해당하는 親著의 子)로 바뀌었다. 게다가 막부의 간섭은 오오우치씨에게도 미쳤기 때문에 오오우치씨家 내부에도 내분이 발발하였고, 쇼니씨도 참가해 오오토모 모치나오(大友持直)·오오우치 모치모리(大內持盛)·쇼니 미치사다(滿貞은 1433(永享5)년 8월에 戰死)와 오오토모 치카즈나·오오우치 모치요(大內持世)의 대립이 발생했다. 이 결과, 오오우치 모치나오는 막부의 지지(“大友・少貳御治罰御教書并御旗”)를 받은 오오우치 모치요에게 패배해 1436(永享8)년 6월의 분고(豊後)姫岳城 낙성 후에 몰락했다.¹⁴⁾ 그러나 조선통교는 오오토모 모치나오 몰락 후에도 同氏 명의의 통교는 계속되고 있

11) 《세종실록》 10년 12월 신묘조. 田犬은 사냥에 이용되는 개.

12) 《세종실록》 11년 7월 갑술조. 또한 오오토모씨의 조선 통교를 취급한 것으로 [外山 1982, 제1편 제5장]이 있는데, 근년의 중세 일조관계사 연구의 성과를 비추어 본다면, 수정해야할 곳이 많다.

13) 오오토모 모치나오의 사자로는 “宗阿彌陀佛”, “所阿彌”와 같은 阿彌 칭호를 가진 자가 이용되는 경우가 있었다(《세종실록》 19년 8월 무진조, 20년 6월 무인조). 그들은 하카타 오키노하마에서 土居道場이라고도 칭하는 稱名寺의 관계자라고 추측된다.

14) 그 후, 오오토모 모치나오의 동향은 불확실하지만, 「志賀文書」(《續編年大友史料》 4, 102호), 「大友氏系圖」(《續群書類從》 제6집 상), 《寛政重修諸家譜》등의 국내 사료에 의한다면, 1445(文安2)년 1월 4일 死去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더욱이 그가 사망했다고 전해지는 1445(文安2)년 이후도 모치나오 명의의 통교가 존재한다.¹⁵⁾ 이것들은 확실히 이전 시부카와씨가 몰락한 직후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아마, 하카타 상인들은 모치나오 사송을 하청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몰락이나 사후에도 통교권을 확보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된다(유형Ⅵ). 덧붙여 1439(세종21)년의 단계에서 조선측이 근년에 들어와 大友殿의 서계를 소지하고 도항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지적하고 있지만,¹⁶⁾ 그 실태는 하카타 상인이 大友殿 서계를 휴대하고 통교 무역을 전개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15세기 오오토모씨의 조선 통교 실태는 종래 평가되어 왔던[外山1982] 만큼 높지 않은 것이 아닌가. 아마, 그 내막은 모치나오 사송과 같이 청부와 위사가 많은 것이 아닌가. 그것은 《海東諸國紀》「大友殿」¹⁷⁾의 기재를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그곳에는 永享 연간 이후에 발발한 북부 큐슈 지역의 정치적 혼란에 대한 오오토모씨 내부의 분열 상황이 기술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내 사료에 의해 복원할 수 있는 실제의 변천과 합치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정보는 조선에 도항한 북수 계통의 오오토모 명의의 사절에 의해 초래된 것이며, 근년 《海東諸國紀》에 기재되는 많은 일본측 통교자가 위사였다고 보고[長2002b]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해보면, 당시 오오토모씨의 조선 통교는 결코 과대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海東諸國紀》「大友殿」의 말미에 “大友殿은 큐슈에서 兵이 강하고, 小二 이하 모두 그에게 敬事한다. 그렇지만, 大友殿을 칭하는 사람은 數人이 된다. 분고(豊後)州는 큐슈의 동쪽 땅에 있어 가장 멀다. 오는 사람이 희소로 해 아직도 그 진위를 잘 판별할 수 없다.”고 있는 것은 확실히 그 실태를 정확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마, 오오토모씨가 주체적으로 직접 조선 통교를 전개한다는 것은 日・朝 牙符를 획득하여 쓰시마 소우씨와 접촉하고 있었던[橋本1998, 10-11쪽] 16세기 전반이 아닐까 생각한다.

5) 중앙정권과의 제휴

하카타 상인은 오오토모씨의 통교를 담당한 것 이외에도 통교 통제를 회피하는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그것이 중앙정권(무로마치막부)과 일본을 방문한 조선통신사와의 접촉이다. 당시 아시카가 요시노리(足利義教)期の 조선외교는 단절로부터 재개로 변한 대명외교와는 정반대로 조선으로부터의 사절에 대한 회례사도 보내지 않았으

15) 예를 들면, 《세종실록》 19년 5월 을미조, 《세조실록》 2년 4월 경신조 등.

16) 《세종실록》 21년 4월 을미조.

17) 申叔舟著/田中健夫譯註, 《海東諸國紀》(岩波文庫, 1991년), 174-177쪽.

며, 다만 대장경을 요구하는 구청사만을 파견하는 매우 소극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외교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關1997, 141-142쪽].

이 상황에서 1432(永享4)년 막부의 건명선 재개에 진력한 소우킨은[伊藤2002 a, 122-124쪽] 조선통신사 朴瑞生의 접대나 호송(나아가 호송에 편승하는 무역도 실행), 피로인 송환이나 유효한 일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선측의 환심을 샀고, 아울러 무로마치 막부 및 관령 시바(斯波)씨의 조선 통교를 대행하는 입장을 획득했다[田中1959, 54-55 쪽][佐伯1999, 112-116쪽]. 소우킨의 이러한 활동은 당시의 통교 통제와 결코 무관계하지 않다. 서계에 의한 통제에 가세해 소우 사다모리(宗貞盛)가 사송선이나 홍리선에 쓰시마 도주 문인의 휴대 의무까지 제안했던 당시, 하카타 상인은 통교권 확보·확대를 위한 새로운 노력을 하고 있었다. 분명히 중앙 정권과의 제휴는 궁극의 선택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소우킨은 하카타 상인 道性和 함께 일본국왕 사로서 조선에 도항하여 1430(세종12)년 2월에 물러날 때, 조선측으로부터 일본국왕 뿐만 아니라 管領 시바 요시아츠(斯波義淳)와의 서계도 맡겨지고 있다.¹⁸⁾ 이 때 그는 자기 자신이 일본국왕사의 사절로서 도항하는 것과 병행함과 동시에 受圖書人으로서의 통교권도 행사해 소우킨 사송인도 파견¹⁹⁾하는 등 이중 통교를 전개하고 있다. 확실히 소우킨은 조선측의 통교 통제의 그물망에 전혀 걸리지 않는 일본국왕사를 활용해 통교 무역의 확대를 꾀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1431(세종13)년 2월, 日・朝통교의 場에 처음으로 僞日本國王使가 등장한다[關1997]. 이 때, 일본국왕사를 자칭한 舍溫은 교토(京都)로부터 전송되었다고 하는 서계를 소지해 도항했지만, 조선측은 그 예의에 맞지 않는 서계가 국왕(아시카가 요시노리; 足利義教)의 書가 아닌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²⁰⁾ 그 다음 해에 대장경을 청구하기 위해眞使였던 일본국왕사 梵齡과 시로우(而羅; 四郎으로 소우킨의 子)가 가져온 서계에 “比三數歲, 以封內事殷, 間缺報信, 非緩也”²¹⁾라고 있어, 이 3년간 국왕사의 통교가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부터도 舍溫의 국왕사가 위사였다는 것은 확실하다(유형Ⅵ).

그럼, 이 가짜 일본국왕사는 누구에 의해 창출된 것일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 위사에 사송인을 동행시키고 있는 소우킨일 것이다[關1997, 143쪽]. 즉, 하카타 상인이 국왕사의 사절이 되려고 해도 국왕사 파견의 주도권은 어디까지나 일본국왕(室

18) 《세종실록》 12년 2월 임오조.

19) 《세종실록》 11년 12월 기해조.

20) 《세종실록》 13년 2월 병오조, 동년 3월 경오조.

21) 《세종실록》 14년 5월 경진조.

町殿=아시카가 요시노리)측에 있었으며, 그 빈도는 결코 그들의 욕구를 채우지 못하였다. 거기서 독자적으로 국왕사 명의의 위사를 창출해 자유 의지에 근거한 통교를 실현하려고 했던 것이 전술한 畠山(畠山)의 偽日本國王使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국왕사 레벨의 위사를 창출하려면 선례를 답습하여 敵禮로서 國書(서계)·사절·예물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적 규모로 통교 무역을 전개한 하카타 상인에게 예물의 조달은 문제가 없었지만, 외교 절충(한시문 交歡[村井1995] 등도 포함)에 뛰어난 사절(정사·부사)의 人選이나 “遣朝鮮國書”의 위조는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특히, 국서의 위조는 용이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국왕사 국서의 文面은 수사 기술이나 관습·고전 지식을 구사해 작성되고 있어 이런 종류의 한시문 능력에 뛰어난 교토 五山계의 선승이 그때마다 선정되어 기초 하고 있었으며, 끝에는 “德有鄰”의 印이 날인되고 있었다. 그 외에 국서의 용지나 그 접는 방법, 국서를 넣는 書函에 대해서도 일정의 관례가 있었다[橋本1997c][伊藤2002c]. 즉, 국서 위조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술(노하우)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 점에서 偽日本國王使를 처음으로 창출한 하카타 상인에게 이러한 노하우는 아직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畠山(畠山)의 위사도 조선측에 의해 서계의 의심점이 지적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성공에 이르지 못하고,²²⁾ 독자적인 偽日本國王使의 파견은 좌절했다.

6) 소우 사다모리(宗貞盛)의 하카타 진출과 하카타 상인

북부 큐슈의 정치적 혼란이 계속된 당시, 1431(영향3)년 11월에 오오우치 모치요(大內持世)의 부젠(豊前)·치쿠젠(筑前)進攻이 개시되자, 쇼니 요시요리(少貳嘉頼)의 출진 요청을 받은 소우 사다모리가 다음 해 3월 4일 이전에 치쿠젠에 渡海하여 4월에는 하카타를 장악했다[佐伯1978]. 이후, 쇼니(少貳)·소우(宗)체제의 지배 영역은 하카타 해안지역 일대에 이르렀다. 소우씨에 의한 하카타의 군사적 장악은 소우씨가 하카타-쓰시마-조선이라고 하는 주요 유통 루트를 확보한 것을 의미하고, 이것을 분기로서 소우 사다모리의 조선통교는 외교가 주목적인 통교로에서 무역을 주목적으로 하는 통교로 변화하고 있다[荒木2003].²³⁾ 쓰시마에서는 서계에 의한 통교 통제 후, 쓰시마내의 중소 영주뿐만 아니라 소오다(早田)씨와 같은 유력자까지도 소우 사다모리의 명의를 빌려 형식적으로 사옹인이 되어 무역에 종사하는 등(유형Ⅳ), 사다모리는

22) 다만, 조선측은 이 偽日本國王使에 대해서도 소량의 回賜品을 하사하고 있다(《세종실록》 13년 3월 정축조).

23) 이하, 제7절과 제8절의 기재는 [荒木2003]의 성과에 의한 것이 많다.

在地勢力의 무역 활동을 통교 통제에 이용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통제내에 흡수하고 있었다[長1987, 164-168쪽][荒木2003]. 사다모리의 통교가 무역 주체로 된 배경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이러한 명의를 빌린 통교(名義借通交)속에는 쓰시마내 세력뿐만 아니라 하카타 상인의 존재가 있었다고 본다. 물자의 집산지인 하카타는 소우씨에게 스스로의 조선 통교 무역을 항상적으로, 또 원활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도 중요한 거점이었다. 즉, 하카타는 통교상 필수 불가결한 물자의 조달을 실시하는 장소이며, 回賜品の 전매를 행하는 중요한 시장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때문에 하카타에 진출한 소우씨는 매우 빠른 단계에서부터 하카타 상인을 보호하여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한편, 하카타 상인측도 시부카와씨 몰락 후, 하카타 오키노하마에 진출해 온 오오토모씨와 연결해 온 바와 같이 통교 통제의 와중에서 조선 통교에 정통하고 서계 발급권도 보유하는 소우 사다모리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어 스스로의 조선 통교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의식이 강했다고 생각된다.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조선측의 통교 통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하카타 상인은 독자적인 통교가 곤란한 상황에 놓여있어 그들은 오오토모 명의를 통교무역을 행하거나 일본국왕사의 사절이 되는 등 각종 수단을 강구하고 있었다(다만, 僞日本國王使의 창출에는 실패해 좌절하고 있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소우씨와 하카타 상인의 생각은 조선 통교를 지향하는 데에 일치하고 있었으며, 아마도 하카타 상인들은 소우 사다모리의 名義借通交를 행하고 있었던 것일 것이다(유형Ⅳ). 1434(세종16)년, 소우 사다모리가 조선측에 대해 서계에의 날인하는 곳의 차이에 따라 사다모리 자신의 통교와 諸氏의 통교(名義借通交)를 구별하겠으니 이후는 접대에 차별을 두도록 제언하고 있는 것은 사다모리의 名義借通交가 얼마나 많았던 것일까를 말해주고 있다[荒木2003, 90쪽].

그러나 1436(영향8)년의 북부 큐슈를 둘러싼 공방으로 쇼니·소우체제에 의한 하카타 지배는 좌절되었고, 다음 해 5월부터 오오우치 모치요의 적극적인 하카타 지배가 개시된다. 이후, 소우씨에 의한 하카타 지배가 부활한 것은 1440(영향12)년 오오우치 모치요의 신청에 의해 막부가 쇼니 요시요리(少貳嘉賴)를 사면[佐伯1992]한 후인 동년 8월이다. 그런데, 소우씨가 하카타지배 쟁탈전에서 밀려났던 이 시기는 日・朝 통교에서의 통제가 강해졌던 시기이기도 하다. 종래, 日・朝 통교의 場에서는 서계에 의한 통제가 주요한 규제책이었지만, 1426(세종8)년 5월 이전, 소우 사다모리는 사송선·흥리선에 대해서 쓰시마 도주 문인을 발행했기 때문에 조선측은 문인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을 접대를 하지 말라는 제안을 했다. 이 새로운 제안은 1435(세종17)년 受圖書人에 대해서도 적용되어 문인에 의한 통제가 조직적으로 운용되기 시작했다.

受圖書人인 소우킨도 문인의 적용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1438(세종20)년 10월, 모든 일본측 통교자(당초는 일본국왕 및 제거추사는 대상외)는 쓰시마 도주 문인을 소지해 도항해야 한다고 하는 문인의 제가 확립되었다. 이렇게 엄격한 통교 통제의 적용은 하카타 상인의 조선 통교 무역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되어진다. 지금까지 九州探題 시부카와씨 명의·오오토모씨 명의·소우 사다모리 명의의 위사나 名義借通交를 전개하고 있던 하카타 상인(受圖書人으로서 宗金の 통교도)의 모든 통교 형태가 문인에 의한 통제의 대상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名義借通交의 명의인이었던 소우 사다모리는 이 사이에 오오우치 모치요에 의해 하카타 지배로부터 밀려나고 있었으며, 하카타상인에 의한 조선통교의 환경은 불안정 요소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문인의 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된 다음 해인 1439(세종21)년은 4월까지의 시점에서 “금년 使人 무려 1천 3백여 명”이라고 하는 많은 수의 도항자에 의한 조선통교를 확인할 수 있어 조선측은 그 접대에 궁핍해 있었다.²⁴⁾ “諸處使送人”의 상당수는 도주 문인을 받지 않고 도항한 자(소우 사다모리 이외가 발급한 문인을 받아 도항하는 사람도 포함), 위조 서계나 塗抹 書契를 소지하고 도항한 자, 서계·문인을 詐僞하여 받아 도항한 자들이었다.²⁵⁾ 다시 말하면, 문인의 제 도입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조선반도로 도항하는 자가 엄밀하게 관리되어진 결과, 종래에는 간과되어지고 있던 위법 통교자의 내실이 전부다 밝혀지게 되었다. 이 때문에 조선 정부는 소우 사다모리에게 敬差官을 파견해 “諸處使送人”에게 도주 문인을 발급할 것을 장려함과 동시에 특히 “육지(큐슈)諸處 使送客人 등”의 진위를 엄밀하게 판별해 문인을 발행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조선 정부가 “諸處使送人” 속에 다양한 위사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또는 알고있다하더라도 대응책이 없음) 수용하고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동년 10월, 조선측은 여전히 “冒受書契而來者”가 횡행하는 사태를 우려해 이러한 서계를 소지하고 도항한 자들에 대한 상세한 대응책을 결정했다(정식 시행은 다음 해 1월부터).²⁶⁾ 이 결과, 소우 사다모리·소우 모리쿠니(宗盛國)·소우 시게나오(宗茂直)명의의 서계를 위조·개찬해 도항하는 사람이나, 使人이나 그 명의를 사칭 해 도항하는 위사가 잇따랐고, 때로는 소우 사다모리 圖書(“宗氏都都熊丸”圖書)를 위조(私圖書의 작성)·僞着하는 자들까지 등장하는데, 조선측은 위사의 존재가 발각된 시점에서 토물의 수수를 거부하고 접대하지 않은 채 還送

24) 《세종실록》 21년 4월 갑오조.

25) 《세종실록》 21년 4월 을미조, 동월 갑진조.

26) 《세종실록》 21년 10월 을미조.

했다.²⁷⁾

한편, 여기서 조선측이 위사에 대해 소우 사다모리에게 가장 주의를 환기시킨 것은 큐슈의 사송인이 소지한 서계이다. 왜냐하면, 위사의 실태로서 “소우 사다모리(宗貞盛)·소우 모리쿠니(宗彥七;宗盛國)·소우 시게나오(宗茂直) 등의 서계”를 받아 오는 왜인에는 쓰시마 이외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佐志殿·志佐殿·薩摩州·石見州·大友殿 書契”를 받아 오는 사람이라도 그것을 위조해 오는 “간사한 무리”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²⁸⁾ 그럼, 여기에 보이는 것과 같은 위조·개찬 서계²⁹⁾를 소지하고 통교한 큐슈 사송인의 정체는 누구일까. 아마, 그 주요한 세력으로서 하카타 상인의 존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카타 상인은 이전부터 서계에 의한 통제 회피책으로서 九州探題 시부카와씨 명의·오오토모씨 명의·소우 사다모리 명의의 위사나 名義借通交를 전개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위조 서계의 명의로서 소우 사다모리와 함께 이름이 알려져 있는 소우 모리쿠니와 시게나오는 소우씨가 치쿠젠에 진출했을 때, 적극적인 하카타 지배를 전개해 하카타 상인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이다. 소우씨의 하카타 철퇴에 동반해 하카타 상인은 문인 발급자인 소우씨와의 항상적으로 제휴가 불가능하게 되어

전술한 위사 창출에 이른 것이라고 추측된다. 더욱이 통교 통제의 준수를 요구하는 조선측의 대응에 따라 하카타 상인에 의한 각종 명의로서 사송인 대량 파견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통제를 회피하고 무역을 전개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으로서 유효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통교 통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서계나 문인의 위조·개찬, 圖書의 위조·위작·사칭이라고 하는 모든 수단을 구사해 서라도 무역을 실현시키려고 시도한 그들의 사고는 그 기술이 아직도 미숙했다고는 하나 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위사 창출 테크닉의 경험 내지는 모태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27) 《세종실록》 21년 10월 갑신조, 10월 계미조, 11월 병인조, 11월 기미조, 12월 을묘조, 22년 5월 경신조, 24년 10월 임자조, 27년 6월 신해조.

28) 《세종실록》 21년 4월 을미조.

29) 서계 위조라는 것은 원본 서계가 존재하지 않고, 처음부터 작성된 僞書를 말한다. 改竄서계라는 것은 원본 서계가 존재하며, 원본을 참고하여 文面을 개찬함으로서 작성된 것을 가리킨다.

7) 癸亥約條의 성립과 그 영향

1440(永享12)년 8월 이후, 하카타는 소우씨와 오오우치씨에 의한 斷續的인 지배가 계속되지만, 1447(文安4)년 오오우치 노리히로(大内教弘)가 치쿠젠(筑前) 守護에 補任되자, 쇼니(少貳)·소우(宗) 체제는 약체화하였고, 소우 사다모리 자신도 치쿠젠에서 많은 지행지를 상실하여 쓰시마에 歸島했다. 이 사이에 短期的이긴하지만, 소우씨의 하카타 지배가 부활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으로부터 하카타 상인에 의한 소우 사다모리의 名義借通交가 재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통교형태는 1443(세종25)년 소우 사다모리와 조선과의 사이에서 주고받은 계해약조에 의해 눈에 띄게 저하된다. 즉, 쓰시마 도주의 세전선이 50척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사다모리의 名義借通交權이 축소되어 버렸던 것이다(동시에 조선은 쓰시마 郡主 소우씨와의 사이에서도 순차적으로 세전선 定約을 도입). 게다가, 다수의 소우씨 被官이 치쿠젠·히젠(肥前)의 영지를 상실해 그 대체 급부로서 세전선업무를 희망하여 세전선의 지행 대상화가 진행됨에 따라[荒木2003], 소우씨 명의를 의한 하카타 상인 통교권이 보장되지 않게 되었다. 여기에 이르러 하카타 상인은 서계·문인에 의한 통제책을 합법적으로 회피하는 새로운 수단을 모색하게 된다.

그 하나가 일본국왕사에 편승하는 것이다(유형Ⅱ). 중요한 사례이므로 이하에 자세히 언급해 보겠다. 1448(세종30)년, 몬케이 쇼우유(文溪正祐)를 정사로서 교토 南禪寺를 위해 대장경을 구청하는 일본국왕사가 조선에 도해했다. 동년 6월, 몬케이 쇼우유 등은 근정전에서 세종과 접견하고 국서를 헌상했다. 국서에는 아시카가 요시나리(足利義成; 足利義政)가 조선에 대장경을 구청한다는 취지가 있었지만, 이것을 본 세종은 불신감을 안고 있었다.³⁰⁾ 실은 이 이전에 몬케이 쇼우유는 宣慰使 姜孟卿에 대해서 “進香輝德殿”과 “請藏經”을 위해 도향한 것을 고하고, 나아가 禮曹 제위 각하 앞으로 “... 源義成, 雖接兄之武而即其位, 然歲尚幼矣, 不克嗣音, 國人爲之怏怏, 去歲丁卯(世宗29年)八月, 特擢小僧, 以銜(銜)修好之命, ... 竊承太上皇后, 前年(世宗28年)厭世, 兩國中間, 鯨波万里, 不能當時相恤, 因循至今, 茲命小僧(文溪), 虔備禱祭于月宇下, 故裝小선船, 以載土宜若干, 所以別凶事, 伏巧大朝肅拜之後, 擇日, 二三子, 謹詣尊廟, 諷演(經), 以祈冥福, 是則我王之命, 而小僧將之, 亮察, 太平興國南禪寺, 廻我朝第一禪刹, 而王臣尤崇敬之, 頃者, 鬱攸作變, 法寶盡燼, 上下失所依歸, 唯願獲一大藏經七千余卷, 以付回舶, 我王書中已言之詳矣, 預令左右知之, 勿勿怪怪...”(밑줄은 필자에 의함)라고 하

30) 《세종실록》 30년 6월 을해조.

여 미리 연락(宣傳)하고 있었던 것이다.³¹⁾ 그러나, 세종이 실제로 본 아시카가 요시나리 국서에는 “講和・請經”만 기록되어 있었고, “進香”의 건은 일절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즉, 몬케이 쇼우유가 사전에 “進香”과 “請藏經”에 대해 국서 안에 상술되고 있다(밑줄 부분)고 연락한 것과 실제 국서의 내용이 어긋나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진향을 위한 제문도 “國王之文”이 아니라, 몬케이가 초안한 문장(다만, 이 제문 자체는 훌륭한 것이었다[村井1995, 117쪽])이었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조선 정부와 몬케이 사이에 격렬한 논의를 주고 받았지만, 결국, 日本國王 使臣의 輝德殿 진향은 실현되었다.

그러나 다음 달(7월), 표류민 송환을 위해 이키(壹岐)島에 파견되고 있던 사역원 관원이었던 皮尙宜가 귀국하자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³²⁾ 皮尙宜는 歸途 중 쓰시마의 소우 사다모리 거소에 들렀을 때, 무로마치 막부로부터 소우 사다모리 앞으로 보내진 “日本國王敎書”를 보고 귀국하고 있었다. 그리고 교서 안에 “使臣船一”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몬케이 쇼우유 등이 3척의 선박으로 도향하고 있음을 보고, “3척 중에 2척은 하카타 ‘興利의 사람’의 배이므로, 국왕사와 동등한 접대나 賜物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진언했다. 정부・예조는 이대로 방치하여 하카타 흥리인(=하카타 상인)과 일본국왕 사신을 똑같이 취급하면, 향후 일본국왕사의 선박 수가 반드시 배증하여 조선측의 부담이 크게 될 것을 우려한 결과, 세종의 허가의 아래 姜孟卿을 북평관의 몬케이 쇼우유가 있는 곳에 파견해 힐책시켰다. 이하 그 문책을 재현해 보겠다.

몬케이 : “우리의 배는 본국의 배가 아닙니다. 하카타에 왔을 때, 하카타인으로 수반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배가 작고, (또 구청하여 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대장경도 많기 때문에, 작은 배만으로는 쌓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2척을 추가해서 (조선에) 도향했습니다.”

姜孟卿 : “이전, (일본왕사가)대장경을 구청했을 때는, 다만 1척만 이었다. 또, 우리나라가(조선) 귀국(일본)에 사절을 파견할 때는, 단지 정식의 사절만이 京都(京都)로 향하는데, 많은 상인을 인솔해 간 적은 없었다.”

몬케이 : “예조에서 말하는 것은 지당한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저를 부모와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점점 정이 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만약 그들을 다른 곳(동평관)으로 옮긴다면, 반드시 불만하여 원망할 것입니다. 부디 같은 곳에 있게 해 주세요.”

31) 《세종실록》 30년 4월 임오조.

32) 이하, 문답의 부분은 모두 《세종실록》 30년 7월 을축조.

더욱이 다른 날에 다시 한 번 일본국왕사신과 강맹경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고갔다.

副官人某：“우리의 배가 파손해 버렸습니다. 제발 수리해 주실 수없을까요.”

姜孟卿：“그 배는 官人(일본국왕사)의 배가 아니다. 하카타 상인의 배다. 어찌하여 당신(副官人)의 요청으로 예조에 (그 요청을)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副官人某：(姜孟卿의 말에 화를 내면서 …) “宣慰使는 나를 상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나는 교토(京都) 南禪寺의 승려이다.”

몬케이：“우리는 일찍이 강남(明)에 왕래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도항)선박의 수가 7-8척이었어도 (船數의) 많고 적음이 거론되지 않았었습니다.³³⁾ 또, 이전 본국의 사선 17척으로 (조선에) 도항했을 때에도 (船數가) 많다고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浦所(제포)에 도착했을 때, 宣慰使는 억지로 丹木·銅鐵을 한성(무역하기 위해)에 수송하지 않는다고 말했었습니다. 때문에 나는 (일본에) 귀국하려고 영등포까지 갔었는데, 거기의 만호가 丹木·銅鐵을 청하기에 (우리들은) 돌아왔습니다. 그 후, 단목 등의 물건은 결국 한성으로 수송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항한 船數를 예를 들어 (우리들)를 힐책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修好하려 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귀국한 후, 누가 다시 도항하기를 바라겠습니까(아니, 도항하려고 생각지 않는다).”

姜孟卿：“우리나라는 원래 일본국왕사의 船數가 많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막부로부터 소우 사다모리에게 보내진) 교서에 (國王使船은) 1척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들어 나머지의 2척이 상선인 것을 알았으므로, 양자를 동일하게 접대할 수 없습니다(고 말한 것일 뿐입니다). 正使(몬케이)에 대한 접대)를 존중하여 장사를 억제하려고 한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몬케이)은 학문에 정통하고 있으면서도 왜 이러한 경솔한 말을 하는 것입니까. 양국의 通好는 일개 官人(의 경솔한 언동)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 전말은 세종이 몬케이 쇼우유의 간청을 받아들여 북평관의 두 곳에서 국왕사와 하카타 상인을 접대하고, 하카타 상인의 선박 수리는 선례에 따라 행해지게 되었다.

조금 장황한 설명이 되어 버렸지만, 한편, 이번 일본국왕사에 하카타 상인의 선박 2척이 합류하여 상인들도 국왕사 레벨의 접대를 향수하려고 획책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게다가 皮尙宜의 증언을 고려한다면, 이 사절은 쓰시마 소우씨와의 제휴는

33) 이 文溪正祐의 발언에 의해 그가 이전의 견명선에 승선하여 입명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황적으로 봐서 永享4년도(1432)나 永享 6년(1434)의 견명선에 승선했을 가능성이 높다.

없었고, 하카타 상인 단독의 행동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전에 하카타 상인은 1431(세종13)년에 단독으로 僞日本國王使를 파견했던 적이 있었지만, 조선측에 간파되어 이후 이런 종류의 위사는 좌절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서계·문인에 의한 통제가 확립되었고, 또 계해약조의 성립도 추가되어 하카타 상인을 둘러싼 조선 통교권은 축소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하에 분명히 하카타 상인의 조선 통교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있었을 때, 교토로부터 일본국왕사(南禪寺請經船)가 하카타에 도착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正使는 몬케이 쇼우유였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실은 몬케이 쇼우유는 1419(세종1)년, 己亥東征(應永의 外寇) 직전에 九州探題 시부카와씨의 사절로서 조선에 도항했던 적이 있는 인물이었다.³⁴⁾ 그 때, 조선으로의 귀화를 요구했었지만, 그 소원은 己亥東征 발발에 의해 좌절되었고, 일본국왕사 무카이 료게이(無涯亮倪) 등과 함께 귀국했다. 그는 일본 회례사 宋希環 등과 하카타에서 交歡하는 한편, 1425(세종7)년에도 조선에 도항하여 舍利殿寺의 노승 등과 시문의 응수를 행하고 있었다. 1440(세종22)년에는 그의 제자 知融이라는 승려도 조선에 도해하고 있다. 그후, 몬케이 쇼우유는 하카타에서 활동한 뒤, 교토에 상경하여 相國寺 등에 관여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南禪寺請經使로서 도해 직전에는 시라카와(白河) 建聖院의 주지였다.³⁵⁾ 다시 말하면, 당시 일본국왕사였던 정사 몬케이 쇼우유와 하카타 상인과는 이전부터 알고 있던 관계이며, 하카타 상인은 이 컨택션을 이용해 조선 통교에 대한 강한 욕구를 타개하는 책략으로서 진사였던 일본국왕사에 편승하는 형태의 제휴를 시도한 것이었다. 게다가 일본국왕사 명의라면 쓰시마 도주의 문인 통제를 받을 필요도 없었다.

이 일본국왕사에는 선위사 강맹경이 “옛날부터 일본국왕사의 배는 1척으로 도해하고 사람도 100여 명을 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3척으로 와 사람도 400명 정도 있다.”³⁶⁾고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다수의 하카타 상인이 참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그것을 상징하듯이 국왕사는 본래의 도항 목적(남선사를 위한 대장경 청구) 이외에도 대량의 단목과 동철을 한성에서 무역하려고 하고 있었다. 더욱이 조선 체제 중에 皮尙宜의 진언에 따라 하카타 상인과 그 상선의 隨伴이 발각되었을 때조차도 몬케이 쇼우유와 副官人(남선사 승려)이 하카타 상인의 利害를 위해 진력하고 있어, 이 사절이 어느 정도 하카타 상인과 결탁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34) 《세종실록》 1년 5월 정묘조. 이하, 몬케이 쇼우유에 관한 기술은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村井1995, 138-141]에 의거함.

35) 《建內記》 文安4년 11월 26일조.

36) 《세종실록》 30년 7월 기축조.

덧붙여 몬케이 쇼우유가 집요하게 요청한 太上皇后에게로의 진향도 본래 몬케이 쇼우유와 하카타 상인의 목적 중의 하나였다고 생각된다. 進香을 원한다는 것으로 조선측의 환심을 사 보다 좋은 후대를 얻으려고 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몬케이 쇼우유가 연락한 진향에 대한 件이 국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세종의 불신감을 재촉해 버렸다.

여기서 몬케이 쇼우유가 가져온 아시카가 요시나리 국서에 대해 살펴보고 싶다. 이 국서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正統(1447) 12年 8月日”이라고 하는 明의 연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은 무로마치 막부(室町殿)가 조선국왕 앞으로 발급한 국서의 연호 표기는 기본적으로 干支 표기였다[高橋1982, 76쪽].³⁷⁾ 전술한 국서는 당시 일본 측 국서로서 異例 중의 異例이다. 또, 足利義政이 국서 안에서 “일본왕”을 자칭 하고 있다는 것도 드물다.³⁸⁾ 足利義政 이후에室町殿의 대조선 외교 칭호는 기본적으로 “日本國源某”였기 때문이다[高橋1992]. 게다가 별폭에 기재된 進物은 조선측으로부터 모두 투박해하고 봉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의심을 받고 있었다.³⁹⁾ 확실히 이때 국왕사가 가져온 進物은 다른 국왕사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향·후추·소목 등 남해 산물의 비율이 많았다. 이상의 것을 정리해 생각해 본다면, 이때의 아시카가 요시나리 국서는 하카타에서 개찬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몬케이 쇼우유는 진향을 요구하는 이유로서 하카타에서 世宗妃가 死去한 것을 알고, 이것을 국왕(足利義政; 아시카가 요시마사)에게 보고했는데, 국왕이 승려를 이끌고 제문을 갖추어 진향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姜孟卿에 설명하고 있다.⁴⁰⁾ 즉, 교토를 출발한 시점에서 국서에 진향에 대한 것을 기입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절이 제포로부터 예조에 연락했을 때 몬케이 쇼우유는 국서 안에 진향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단언하고 있다. 즉, 그의 발언은 하카타에서 국서를 개찬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하카타 상인과의 제휴를 결정한 시점에서 국왕사와 하카타 상인은 전년 世宗妃⁴¹⁾의 사망 정보에 대한 이용을 떠올려 이것에 진향함으로써 조선측으로부터 후대를 얻으려고 생각해 내었을 것이다. 진향은 소우씨(후에는 僞使도) 등이 조선의 환심을 얻기 위해 국왕 습직시 등 행해진 주요한 통교

37) 다만, 아시카가 요시미즈 책봉 이전과 아시카가 요시모치期는 일본 연호, 요시미즈期(사후, 다음해까지)는 明 연호를 사용하고 있다[高橋1982].

38) 九州國立傳物館設立準備室 연구원 橋本雄씨의 교시에 의함.

39) 《세종실록》 30년 7월 병술조.

40) 《세종실록》 30년 6월 을해조.

41) 世宗妃는 세종28년 3월 24일에 사거했다(《璿源系譜》, 진단학회편《한국사》, 연표, 을유문화사, 1959년), 354쪽.

명목이다.⁴²⁾ 사실 몬케이 쇼우유 등은(上・副官人, 侍奉僧, 船主) 우여곡절을 거쳐 진향을 완수했을 때, 조선측으로부터 回賜品을 획득하고 있다.⁴³⁾ 그러나 그들은 개찬국서에 무엇보다 중요했던 진향 내용에 대해 쓰는 것을 잊어 버렸던 것이다. 아시카가 요시나리 국서가 하카타에서 개찬된 것을 생각해본다면, 연호를 통상의干支가 아니라 명의 연호로 표기한 이유도 이해할 수 있다. 또, 進物이 투박했다는 점도 하카타 상인이 무역 이익을 올리기 위해 南禪寺가 求請船 때문에 준비한 進物의 대부분을 남해산물로 바꾼 것일 것이다.

이상과 같이 통교 통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하카타 상인이 眞使인 일본국왕사에 편승하고 있는 모습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다. 진사였던 국왕사라고는 하지만, 그 국서는 하카타에서 하카타 상인의 의향을 반영한 형태로 개찬되고 있어 완전한 眞使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때 하카타 상인이 보인 국서 개찬 기술은 진향에 대해 쓰는 것을 잊은 부주의로 인한 실수나 명연호의 사용이라고 하는 점을 제외

42) 【15세기 進香목적의 사절】(위사를 중심으로)

시기	통교명의	使者
세종28/12/기미	對馬州宗貞盛	道闕
문종즉/7/기유	一岐州留源聞	正倫
문종즉/7/기유	對馬州宗貞盛	光軌
문종즉/9/병진	對馬州宗盛弘	迎山
문종즉/12/임신	一岐州眞弓兵部少輔源水	元少只
문종1/5/계해	對馬島宗虎態丸	可知老時今甫
문종1/8/기사	關西路九州總官教直	靈旭
단종1/2/임인	對馬州宗盛直	中堪
단종1/2/임인	宗虎態丸	可知時只文
예종1/6/무진	筑前州太宰府都司馬少卿賴忠	
성종즉/12/갑자	關西路九州都元師源教直	信沙也文
성종1/7/신해	西海道肥前州松浦丹後太守源盛	
성종1/7/을미	筑前州冷泉津氏母	
성종1/8/임자	薩州伊集院萬鎮隅州太守藤熙久	
성종1/8/기미	薩州伊集院萬鎮隅州太守藤原熙久	
성종1/11/을해	關西道九州都元師源教直	

또한 시대는 내려오지만, 1579(天正7)년에 파견된 右武衛殿 명의의 위사도 1577(선조10)년 11월 29일에 死去한 仁宗妃를 弔慰進香할 목적으로 규정외에 ‘別遣船’을 마련, 渡海하여 조선측과 마찰이 일어났다. 僞右武衛史를 창출했던 對馬宗氏가 무역확대 목적으로 進香을 대외명분을 내세워 배의 加増接待을 꾀했음은 분명하다. 또 이때의 正使는 對馬의 外文會 天荊이었다[米谷 1998, 140-141쪽](米谷의 敎示)

43) 《세종실록》 30년 6월 을해조.

하면, 1431(세종13)년의 僞日本國王使 舍溫 등이 가져온 위서와 비교하여 상당히 완성도가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이 그 후의 대규모 위사 창출시에 활용되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8) 새로운 통교권의 모색

그러나 단발적인 일본국왕사와의 제휴만으로는 하카타 상인의 통교권이 확대될 수 없었다. 때문에 하카타 상인 속에는 琉球國王使의 통교를 하청 받음으로서 조선 통교를 실현하는 사람이 등장한다. 하카타 상인 도우안(道安)은 1453(단종1)년 류큐(琉球)國 中山王 尙金福의 사절로서 도항해, 조선에 “博多・薩摩・琉球相距地圖”를 헌상했다[田中1975, 303쪽](유형Ⅲ). 1455(세조1)년에는 표류민 송환을 명목으로 대량의 동남철과 正布를 반입해 대규모 무역을 기도했지만, 이것은 류큐국왕 명의를 이용한 위사였다[橋本1997b](유형Ⅵ). 이것이 하카타 상인에 의한 僞琉球國王使의 조건이다. 1457(세조3)년에도 대규모 무역을 목적으로 조선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때의 琉球國王使도 류큐측의 의도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기는 했지만, 道安의 의도가 강한 琉球國王使였다(유형Ⅲ). 이러한 道安의 활동은 하카타 상인에 의한 새로운 조선 통교권 획득이라는 움직임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1457(세조3)년의 사절은 歸途上의 쓰시마에서 조선으로부터 류큐로 주어진 綿布・紬布・書契가 약탈되었다고 道安이 조선 정부에 보고하고 있다. 조선측이 소우 시게모토(宗成職)에 물어본 결과, 시게모토는 道安의 신고는 허위이고, 이러한 거짓말을 하는 간사한 무리에 대해 조선에서 서둘러 지시를 내려주시면, 자기가 처벌하겠다고 대답하였다[佐伯2003]. 결국, 조선측은 소우씨의 주장을 지지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된 것일까. 당시 쓰시마는 다음 장에서 상술하는 바와 같이 深處倭 명이나 王城大臣使의 위사 통교권을 대규모로 행사하는 것으로 통교권의 확대를 획책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琉球國王使를 중심으로 진사나 위사를 독자적으로 전개하는 道安의 조선통교는 문인에 의한 통교 통제를 받는 일 없이 대규모로 전개되고 있었다. 道安의 통교형태는 조선 통교의 場에서 주도권을 잡고 싶은 소우씨에게 매우 걸림돌이 되고있었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시대적으로는 16세기의 사료가 되지만, 쓰시마 소우씨가 “博多津之仁”(=하카타 상인)에게 “소우씨에 대해서 疎儀를 행하는 일이 있다면, 단 1명이라도 便船之儀(=朝鮮渡海船)의 편의를 봐주지 않을 것이며, (비록) 쓰시마에 渡海해 오더라도 쓰시마에 머물게 할 것이니, 명심하라.”⁴⁴⁾고 주의를 환기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아마도 15세기 쓰시마 소우씨도 기본

적으로 같은 논리가 아니었던가 생각한다. 이 결과, 道安의 琉・朝 통교는 쓰시마에 의해 방해받기 이후, 그가 琉球國王使 명의의 사절로서 조선에 항해하는 일은 없어졌다. 즉, 쓰시마 소우씨에 의해 道安이 琉・朝 통교(후에 하카타-쓰시마-三浦라고 하는 부분)의 場으로부터 배제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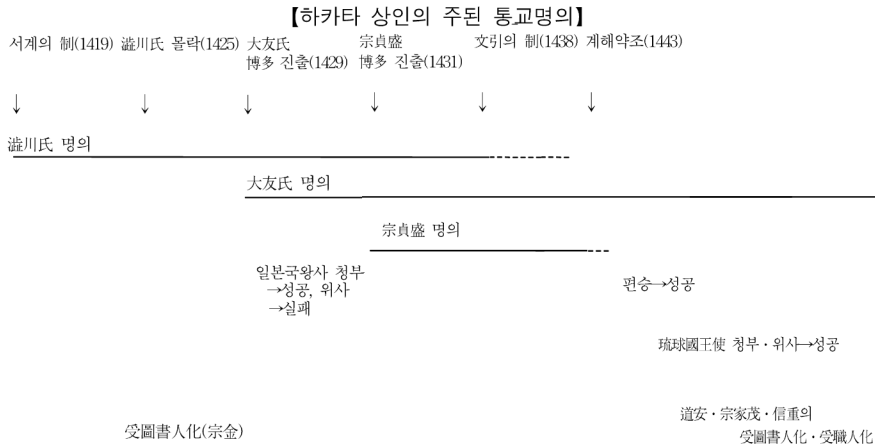
道安의 조선 통교가 부활하는 것은 앞의 사건이 있고 11년 후인 1468(예종즉위)년이다. 그러나 이것은 受職人으로서의 통교였다. 아마, 이 통교의 공백 기간에 道安은 쓰시마 소우씨와의 사이를 회복시켰을 것이다. 이후, 道安은 일관하여 受職人으로서 통교하고 있다[佐伯2003].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道安이 조선통교의 場에서 쓰시마 소우씨의 관할하에 들어간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런데, 道安은 1455(세조1)년에 受圖書人이 되고 있다. 당시 受圖書人이 된 하카타 상인에게는 소우 이에모치(宗家茂; 宗金의 子, 세조1년에 수圖書), 후지와라 노부시게(藤原信重, 세조 2년에 수圖書)가 있다[中村1965, 548쪽]. 한편, 하카타 상인으로 수직된 사람도 많이 등장한다. 특히, 道安・이에모치(家茂)・노부시게(信重)가 受圖書人이면서 受職人이기도 했다. 즉 하카타 상인이 조선 통교를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受圖書人의 통교권과 受職人 통교권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松尾2003].⁴⁵⁾

이와 같이 1450년대 이후의 하카타 상인은 어려운 통교 통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琉球國王使의 하청이나 위사, 受圖書나 受職이라고 하는 수단을 이용해 독자적인 통교권을 확보하려고 모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새로운 통교권을 획득해도 道安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최종적으로 문인 발급을 담당하는 쓰시마 소우씨와의 유효한 관계가 없다면, 그 통교권은 효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므로 15세기 후반 하카타 상인은 조선 통교상, 쓰시마 소우씨와 밀접하게 제휴할 수 있을 기회를 엿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44) 「大永享祿之比 御狀并書狀之跡付」, 64호([田中1982, 463-464쪽])

45) 또한, [松尾2003, 29쪽]에 의하면 1470(성종1)년 이후, 수직왜인의 도서 통교는 금지되고 있는 듯 하다.



9) 하카타 상인 이외의 통교자들

본절에서는 世宗期の 통교 통제책이 하카타 상인 이외의 일본측 통교자의 조선통교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겠다. 世宗期の 일본측 통교자라고 해도 다양하기 때문에 본절에서는 조선측으로부터 서계 발급권이 묵인되고 있던 佐志殿·志佐殿·薩摩州·石見州·大友殿의 제지역을 고찰 대상으로 한다. 즉, 마츠우라(松浦)지역(佐志殿·志佐殿)·미나미큐슈(南九州)지역·산인(山陰)지역이다(大友殿에 대해서는 제4절에서 既述).

마츠우라 지역에는 世宗期 이전부터 諸氏의 조선 통교를 확인할 수 있다. 志佐씨는 태종기부터 매우 활발한 조선 통교를 전개하고 있다. 志佐씨가 다른 諸氏와 비교해 매우 빠른 단계부터 受圖書人이 되고 있는 것은[松尾2002, 3-8쪽], 동씨의 조선통교에 대한 강한 지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그 통교는 문인의 制가 확립한 1438(세종 20)년 10월 이후, 단절된다. 아마도 문인에 의한 어려운 통교 통제에 志佐씨가 능숙하게 대응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志佐씨는 통제가 서서히 강해지는 시기에 조선 통교를 개시하지만, 문인의 制 확립 후에도 통교는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1443(세종 25)년 西餘鼠島事件⁴⁶⁾에 관여한 이키(壹岐) 왜구의 搜捕를 조선측이 요청했을 때 鴨

46) 1443(세종25)년. 壹岐 왜구가 조선반도 근해에 있는 西餘鼠島에서 조선 선박을 습격한 사건.

打舛와 함께 왜구 세력을 보호해 조선 정부에 반발하는 자세를 취하기도 했으며, 수하의 어선이 孤草島 釣魚禁約을 위반한 이후부터는 조선 통교가 단절되었다[松尾 2002, 10-13쪽]. 鴨打舛는 태종기에 통교 사례가 약간 보이고 있지만, 西餘鼠島事件으로 佐志씨와 같이 反朝鮮政府의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대체로 조선 통교에 대해 관심이 낮았다[松尾 2002, 14쪽]. 한편, 요부코(呼子)씨는 태종기부터 조선통교를 개시하지만, 서계에 의한 통제가 시작되자통교를 단절시켰다. 그러나 西餘鼠島事件 때, 呼子씨는 시오즈루(塩津留)씨 및 마유미(眞弓)씨와 함께 왜구 搜捕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공적에 의해 3씨는 조선으로부터 圖書를 하사받아[中村榮孝 1965, 538쪽], 受圖書人으로서 정식적 통교권을 획득했다. 이 사건 이전에 塩津留씨의 조선 통교는 적었는데, 眞弓씨는 전혀 통교를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松尾 2002, 17-27쪽]. 3씨는 世宗期の 통교 통제책에 의해 통교가 低調化 중에 있었음에도 무역에 대한 강한 지향성을 계속 유지한 결과, 西餘鼠島事件을 획기로서 독자적인 통교권을 확보했던 것이다.

계속해서 미나미큐슈 지역의 특징적인 조선 통교자를 보겠다. 이 지역의 명의인은 조선 초기부터 빈번한 통교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臣이라고 칭하면서 書を 받든다”, “表를 받든다”는 등 조선에 신하의 예를 취하면서까지 통교를 요구하는 모습⁴⁷⁾은 그들의 조선 통교에 대한 강한 지향성을 엿보게 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1415(태종15)년 12월, “日向州島津源元久” 명의의 사절⁴⁸⁾이 조선에 도해하고 있다. 통교 명의인 모토히사(元久)는 남북조시대 중기 이래 분열하고 있던 미나미큐슈 3개국(薩摩・大隅・日向) 守護職을 통일한 시마즈 모토히사(島津元久)를 말한다. 그러나 모토히사는 1411(應永18)년 8월 6일에 이미 사망하였고, 당시는 남동생 히사토요(久豊)가 후계자로서 위치하고 있었다. 모토히사 명의의 사절은 이후, 1418(태종18)년 1월, 1418(세종즉위)년 8월, 동년 10월(8월과 동일의 가능성 있음), 1420(세종2)년 12월 등 몇 차례에 걸쳐서 사료에 등장하지만,⁴⁹⁾ 그 모든 것이 위사인 것이된다.

그렇다면 이 모토히사 使送은 누구에 의해 창출된 것일까. 무로마치期 미나미큐슈 지역의 조선 통교자를 분석한 마수타(増田)씨는 모토히사의 후계자가 된 히사토요가 모토히사의 명의를 사용해 遣使했다고 한다[増田 1970, 31쪽]. 확실히 사료상, 시마즈 히사토요에 의해 처음으로 조선 통교가 이루어진 1423(세종5)년 1월, 그는 “日本國日向大隅薩摩三州太守源朝臣久豊”이라고 이름을 밝혀 조선측에 모토히사의 남동생인

47) 《태조실록》 4년 4월 무자조, 《태조실록》 2년 9월 을유조, 15년 12월 병자조, 《세종실록》 즉위년 8월 무술조.

48) 《태조실록》 15년 12월 계사조.

49) 《태조실록》 18년 1월 을해조, 《세종실록》 즉위년 8월 무술조, 동년 10월 경인조, 동 2년 12월 계묘조.

것을 전하고 있다.⁵⁰⁾ 그러나 왜 그가 이미 죽어 조선 통교력도 없는 兄의 명의로 사절을 보내지 않으면 안되었는가 하는 이유는 되지 않는다. 대체로 모토히사 사송의 명의를 이용한 것부터가 부자연스럽다. 모토히사는 생전 1409(오에이 16)년에 薩摩・大隅・日向의 수호직을 획득하고 있었다. 그러나 《實錄》, 에 등장하는 모토히사의 이름 밝히기는 일관해서 「日向州太守」이다. 모토히사의 뒤를 이은 히사토요도 3개국 수호직을 획득하고 있지만, 그는 그 직함으로 조선에 통교하고 있다. 히사토요는 1418(영락 16)년, 아시카가 요시모치(足利義持)에게 파견된 明使 呂淵의 귀국을 이용해 사절 性運을 동행시켜 독자적으로 표문을 보내 통교하고 있지만, 이때 명의를 밝힌 것도 “日隅薩三州刺史島津勝存忠”이었다.⁵¹⁾ 存忠는 히사토요의 법명이다. 이와 같이 3개국 수호직의 직함으로 한편으로는 스스로의 명의로 외교를 전개하는 시마즈 히사토요가 3개국 수호직을 가지고 있던 모토히사의 명의를 「日向州太守」로 격을 다 운시켜 조선통교에 사용해야 할 필연성은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 누가 모토히사 명의를 사송을 창출한 것일까. 추측이지만, 전년에 조선측이 표출한 통교 통제책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1414(태종14)년 8월, 조선은 日本國王・對馬島・大內殿・少貳殿・九州節度使 등 10개소 이외의 倭使 도항을 금지하고 있다. 先學에 의하면, 이 통지는 효력을 가지지 않아 통교 통제상 현저한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되고 있지만[中村1965, 449쪽], 적어도 이 통지의 다음 해에 갑자기 창출되는 「日向州太守」 모토히사 사송의 배경에는 이 통지에 의해 계속적인 조선 통교에 위기감을 느낀 세력과의 인과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나미큐슈 지역의 통교자는 기타큐슈(北九州) 지역의 통교자와 같이 조선 왕조 건국 직후부터 통교를 시작하고 있어 그 동향은 일본 열도 타지역의 통교자보다 앞서고 있다. 나중의 일이 되지만, 九州探題가 가지고 있던 서계 발급권이 분산된 곳 중의 하나에 薩摩州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⁵²⁾을 생각하면, 앞 10개소에 薩摩州가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은 높다. 이 경우 모토히사 사송은 앞에서 본 통지를 회피하려고 모색했던 세력(사즈마 상인인가?)에 의해 창출된 것일 것이다(유형Ⅶ).

또, 태조기부터 활발히 조선 통교를 전개한 이쥬우인(伊集院) 요리히사(賴久)의 후계자인 伊集院 藤原熙久는 1434(세종16)년 “薩摩州太守藤原爲久” 명의로 통교를 개시한 이후,⁵³⁾ “熙久” 명의로 통교 명의를 변경시키면서도 활발한 조선통교를 실시했다.

50) 《세종실록》 5년 1월 갑오조.

51) 《(明)태종실록》 16년 4월 을사조, [小葉田1941, 33-34쪽].

52) 《세종실록》 21년 4월 을미조.

53) 《단종실록》 1년 1월 기묘조. 이 1434(세종16)년의 爲久 사송의 존재에 대해서 [増田1970], [長節子2002a]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국내 사료에 의한다면, 1434(永享6)년

그러나 文引의 制가 확립되자 그 통교는 몇 년간 중단되었다.

마지막으로 산인(山陰) 지역(石見州)의 통교자인 수후(周布)씨에 대해 본다. 周布씨는 1425(세종7)년 周布郷 長浜浦에 표착한 조선인 표류민을 쓰시마의 소오다씨를 중개로 하여 송환하면서 개시되고 있다[關2002, 153-158쪽]. 그 후, 1426(세종8)년부터 1432(세종14)년까지 통교가 계속되지만, 기타큐슈(北九州)의 정치적 동란에 대해 周布씨도 군사를 동원했기 때문에 통교가 단절되었다. 그러나 1437(세종19)년에 통교가 부활하여 文引의 制 확립 후임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인 통교를 보였다. 이것은 당시 周布씨 내부에서 발생한 내분에 의해 周布 “兼貞”이라고 하는 가공 명의의 위사가 등장했기 때문이다⁵⁴⁾(유형Ⅷ). 周布씨통교는 이와미(石見)와 쓰시마 사이에 형성된 해상 네트워크를 전제로 하여 쓰시마를 연결점으로 쓰시마 海商과 이와미 海商이 통교를 분담하는 형태로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에[藤川1999], 통교 통제에 반하는 통교回数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보는 것과 같은 周布씨 통교 형태는 하카타 상인이나 이키(壹岐)·마즈우라(松浦) 지역을 제외한 다른 많은 통교자들의 조선 통교에 대한 본연의 자세는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매개자가 통교 무역을 하청받고 있었기 때문에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몰락했을 때, 그 통교권은 자동적으로 海商의 손에 의해 위사 통교권화 되어간 것일 것이다. 다음 장에서 살펴볼 쓰시마 深處倭 명의의 위사 창출 배경에도 확실히 이러한 매개자와 쓰시마 세력의 제휴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2. 위사통교의 확대와 변용

- 15세기 후반 쓰시마 소우씨와 하카타 상인-

1) 1450년대 이후의 深處倭 명의의 통교권

쓰시마 도주 세건선을 50척으로 한정한 계해약조가 성립한 1440년대, 쇼니(少貳)·소우(宗)체제의 약체화에 동반되어 소우씨는 기타큐슈 지역에서의 철퇴를 피할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다수의 소우씨 被官이 치쿠젠(筑前)·히젠(肥前)의 영지를 상실

6월 26일-10월 5일 사이에 爲久는 熙久로 개명하고 있다(都城市史編纂室・新名一仁씨의 教示).

54) 關周一씨는 이 兼貞 명의의 사송 중에도 周布씨에 의한 遣使(眞使)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關2002, 167쪽], 周布씨사 가공 명의의 사절을 파견했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하는 사태에 빠졌다[佐伯1978]. 소우 사다모리는 자기 권력의 구심력 유지를 위해 도주 세건선의 所務權을 그들에게의 대체 급부로 분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때문에 도주 세건선은 약조체결 직후부터 세건선의 파견수가 초과 상태에 빠져 버렸다. 1445(세종27)년, 소우 사다모리는 도주 세건선의 20척 증가를 요구했지만, 조선측에 거부되어졌다. 세건선 확대의 전망이 없는 소우씨에게 새로운 통교권의 획득이 자기 권력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급무였다. 그리고 이 타개책으로서 등장한 것이 15세기 중반 이후, 대규모로 전개되는 위사 명의의 통교이다. 쓰시마 소우씨에게 위사 파견 시스템은 세건선의 보완적 기능을 기대하고 구축된 것이었다[荒木2003, 92-94쪽].

1452(단종즉위)년 6월, 소우 사다모리가 사망하자 도주의 지위는 아들 시게모토(成職)에게 인계되었다. 소우 시게모토(宗成職)는 적극적으로 세건선을 초과해 운용했기 때문에 1455(단종3)년 종래의 도주 세건선 50척의 이외에 인정되고 있던 島主特送船이나 護軍受職船을 50척 이내에 포함시키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쓰시마측의 파견선 수는 감소해 쓰시마의 경제적 타격은 커졌다. 그러나 시게모토는 세건선 초과 파견과 병행하여 도주 취임 직후부터 세건선 정약이 맺어지지 않은 深處倭 명의의 위사 통교를 전개하고 있었다.

이 결과, 深處倭 명의의 조선 통교가 급증하였고, 조선측의 부담이 증대했기 때문에 조선 정부는 시게모토에 대해 深處倭에게는 1년에 2회 이상 문인을 발행하지 않도록 하여 각각의 深處倭와는 1-2척의 세건선 정약을 맺었다. 이 深處倭의 세건선 정약은 深處倭 명의의 위사통교권이 조선측의 제도에 의해 보장된 것을 의미한다[長2002a, 제2부 제4장]. 이러한 深處倭 명의에 의한 위사 통교 확대는 계해약조 이래(소우 사다모리(宗貞盛) 말기 이래) 도주가 직면하고 있던 조선 통교권(세건선) 부족에 기인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사 세츠코씨는 소우 시게모토가 획득한 深處倭 명의의 위사 통교권의 구체적인 예로서 시게모토의 도주 취임 직후에 통교 회수가 급증한 10씨(伊集院藤原熙久・五島宇久源勝・田平源弘・志佐源義・松浦源盛・波多源納・神田源德・呼子源高・塩津留源聞・眞弓源永)의 深處倭 명의를 제시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들 10씨 통교 명의를 중심으로 오사 세츠코씨의 논증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오사 세츠코씨가 앞의 10씨를 예로 든 이유는 1455(세조1)년 11월 예조참의 홍윤성으로부터 소우 시게모토 앞으로 보내진 서계 안에 근래 도항이 증가했다고 하는 深處倭 중에서도 특히 심한 예로서 기록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10씨 통교를 모두 같은 성격의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10씨는 1450년대부터 돌연 통교를 개시하는 初度 通交者(㉔), 長期의 통교 단절을 거

쳐 1450년대에 돌연 통교를 재개하는 통교자(㉑), 15세기 전반부터 어느 정도의 통교 실적을 가지고 있는 통교자로서 15세기 중엽(世宗期の 통교 통제 정비기 이후)에는 통교 명의인의 통교 의욕이 저하된 사람(㉒), 반대로 15세기 중엽의 단계에서도 통교 명의인이 강한 통교 의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㉓)의 4종류로 구별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즉, ㉑에 해당하는 것이 波多源納・神田源德, ㉒에 해당하는 것이 五島宇久源勝・松浦源盛, ㉒에 해당하는 것이 伊集院藤原熙久・志佐源義, ㉓에 해당하는 것이 田平源弘・呼子源高・塩津留源聞・眞弓源永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㉑를 살펴보면, 하타(波多)씨와 코우다(神田)씨는 모두 15세기 전반에 통교 사례를 찾아낼 수가 없다[長節子2002a, 290쪽]. ㉒에 보이는 五島宇久씨는 15세기 전반에 피로인 송환을 계기로 통교를 실시하고 있었지만, 계속적인 통교자가 되지는 못했다[松尾2004]. 마츠우라(松浦)씨도 太宗期에 2번의 통교 사례가 있지만, 이후 통교는 끊어지고 있다[長節子2002a, 290쪽]. 이와 같이 ㉑㉒의 諸氏は 대체로 조선 통교에 적극적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諸氏が 1450년 이후, 돌연 활발한 조선 통교를 전개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오사 세츠코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4씨는 소우 시게모토에 의해 창출된 위사로 단정해 좋을 것이다(유형Ⅵ, 유형Ⅶ). 또, 15세기 후반, 이 諸氏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조선 통교를 개시한 명의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위사라고 인정해도 좋다.⁵⁵⁾

다음으로 ㉓이다. 伊集院 藤原熙久는 기술한 바와 같이 1434(세종16)년부터 통교를 개시하지만, 1450(寶德2)년 시마즈 타다쿠니(島津忠國)에게 패해 肥後國에 도주하여 이후 행방불명이 되었다. 先學이 지적하고 있듯이 이 이후 熙久 명의의 통교는 확실히 위사일 것이다[増田1970]. 무로마치期, 미나미큐슈는 지역 권력자끼리의 항쟁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어 미나미큐슈의 통교 명의의 조선통교를 실제로 담당하고 있던 것은 그것이 眞使라도(쓰시마-) 하카타-사츠마(—큐슈)를 왕래하는 海商이었다고 생각된다(유형Ⅲ). 즉, 熙久 사송을 하청받고 있었던 海商이 熙久 몰락 후, 그 통교 명의를 쓰시마 소우씨와 협력해 운용하고 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⁵⁶⁾ 志佐씨는 문인의 制 확립 이후, 통교가 단절되고 있었다. 이 상황하에 1450(문종즉위)년 돌연, 志佐源義는 圖書를 改給하여 통교를 재개한다[松尾2002, 9쪽]. 이후, “源義” 圖書가 “年久圖書”로서 50년 이상 사용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志佐源義 명의의 통교는 쓰시마에 의한 위사일 가능성이 높다(유형Ⅵ).⁵⁷⁾

55) 앞 장에서 고찰한 鴨打씨가 이 사례에 해당된다. 鴨打씨는 1450년대 이후 갑자기 통교를 재개하고 있다[松尾2002, 16-17쪽].

56) 앞 장에서 고찰한 周布씨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유형㉔이다. 타비라(田平)씨는 15세기 전반부터 적극적인 통교를 전개했다. 그러나 源弘 명의의 통교는 1454(단종2)년 갑자기 연6회의 遣使부터 개시되고 있다. 게다가 쓰시마에는 “彈正小(그대로)彌源弘”이라고 새긴 목인이 있었다는 것으로부터[田代・米谷1995], 통교 당초부터 쓰시마에 의한 위사였다고 추측되고 있다[長節子2002a, 제2부 제5장]. 呼子씨・塩津留씨・眞弓씨는 西餘鼠島事件을 계기로 受圖書인의 통교권을 획득하고 있다. 3씨는 15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도 조선 통교를 강하게 지향해 정식적 통교자로서의 통교권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 3씨가 1450년 이후 모처럼 획득한 독자적인 통교권을 폐기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즉, 쓰시마 소우씨는 3씨 통교권을 등에 업는 형태로 4씨 명의의 위사 통교를 전개하고 있었다고 생각해야 할 것일 것이다. ㉔㉕㉖에 속하는 諸氏 명의의 圖書가 어느 쪽도 “年久圖書”로 되어 있는 것에 반해 呼子源高・塩津留源聞・眞弓源永 명의의 圖書만 15세기 후반에 改給되고 있는 것은 앞의 추측에 대한 방증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15세기 중엽까지 조선 통교에 열심이었던 타비라(田平)씨의 源弘 명의의 통교에 대해서도 1450년대 시점에서의 통교에 田平源弘 자체의 주체성을 완전하게 부정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源高・源聞・源永 3개의 圖書가 1460년대 후반에 집중적으로 改給되고 있는 것은 약간 부자연스러우며, 어떤 시점부터 3씨 통교의 주체성이 쓰시마측으로 이행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무튼 1450년대 이후, 모든 深處倭 명의의 통교가 쓰시마에 의해 위사화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世宗期の 통교 통제를 회피해 15세기 중엽 단계에서도 조선 통교에 대한 강한 지향성과 그를 위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던 諸氏에게는 어느 정도의 주체성이 유지되고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이 점에서 塩津留씨와 宗氏의 관계가 참고가 될 것이다. 塩津留씨는 1472(文明4)년 이키(壹岐)의 정변 후, 쓰시마로 망명했을 때, 소우 사다쿠니(宗貞國)와의 사이에 자신의 통교권의 일부를 양도하고 있다(유형 V). 그 후, 塩津留씨는 三浦의 난(1510년) 이전에 牧山源正印을 획득하였고, 자신 명의의 통교권과 마키야마(牧山)씨 명의의 통교권을 유지했다. 다만, 塩津留씨는 源正印의 명의인이었던 마키야마씨에게 명의료를 지불하고 있어 본래의 명의인에게 권익의 일부가 保留되고 있었다[長節子1987, 제2부 제1장](유형 V). 이와 같이 深處倭 명의 통교권의 실태는 다양하였고, 쓰시마에 의해 완전하게 위사화한 것도 있으며(유형 VI, 유형 VII), 塩津留씨와 牧山씨와 같이 명의 사용자와 명의인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유형 V). 전술한 呼

57) 西餘鼠島事件 이후, 조선 통교에 소극적이었던 佐志씨도 1450년 이후 통교를 갑자기 재개한다[松尾2002, 13-14쪽].

子씨와 眞弓씨 통교권은 상황적으로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추측된다.

어쨌든, 쓰시마 소우씨는 문인의 발급자라고 하는 지위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深處倭 명의의 통교권을 集積했다. 그리고 이러한 명의는 세건선 정약에 의해 확실한 통교권으로 성립했다. 그러나 소우씨는 새롭게 확보한 深處倭 명의 통교권에 대해 또 다른 확대를 기도했다. 1470년대 이후, 深處倭 명의의 통교로 세건선 정약을 초과해 통교한 자들이 증가하고 있다[伊藤2003]. 예를 들면, 1470(성종1)년 宗像郡氏郷⁵⁸⁾・多多良(大内)教之(상기 유형① 형태, [伊藤2003])・五島宇久守源勝명의의 통교가 額外使人을 파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선측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었으며,⁵⁹⁾ 1472(성종3)년에는 肥前州 元胤(千葉, 상기 유형① 형태)・筑前州氏郷・肥前州少弼弘・薩摩州 盛久(상기 유형① 형태)가 계사(성종3년)년에 세건선을 보낸 뒤, 다시 통교를 요구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⁶⁰⁾ 아마, 위사 파견 세력이 額外 使人을 파견함으로써 조선 측과 통교 무역의 기회를 늘리려고 시도한 것일 것이다. 이 경우, 예를 들면 접대받지 않았더라도 過海糧 등의 지급이 있었다면, 계획은 성공한 것이 된다.

2) “조선遣使”의 실태와 쓰시마 소우씨・하카타 상인

쓰시마에서는 앞에서 살펴 본 深處倭 명의의 위사 통교뿐만 아니라, 1450년대 후반부터 王城大臣使(在京 有力 守護를 자칭한 사절)의 위사도 본격적으로 개시되고 있었다. 《海東諸國紀》(1471년 성립)의 「朝聘應接紀」에서 쓰시마 소우씨보다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王城大臣使 명의의 위사는 소우씨에게 好條件의 통교 무역을 가능케 했던 것이다. 1450년대 후반-1460년대에 걸쳐 畠山義就・山名教豊・京極持清 등의 명의를 칭해 조선으로 도항하는 사절이 등장했다. 그들에게 공통되는 것은 무로마치 막부 주변에서 활동 중인 실재하는 유력자의 실명이나 범명과 일치한 명의를 자칭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체는 친족관계에 세대의 오차가 보이거나 관직・官途・범명이 實在者와는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당시는 1454(享德3)년의 畠山政長와 義就의 상속자 분쟁에 의해 교토 주변의 정치 상황이 혼란을 거듭하고 있었던 시대였으며, 전술한 僞王城大臣使는 이와 같은 정치적 동란을 틈타 창출된 위사이다[橋本1997a](유형Ⅶ).

58) 宗像氏郷 명의의 통교는 宗像 일족이던지, 宗像씨의 밑에서 무역을 행하고 있던 상인이 실시한 것이라고 추측된다[佐伯1994].

59) 《성종실록》 1년 9월 병자조.

60) 《성종실록》 4년 6월 기축조.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이와 같은 僞王城大臣使가 眞使였던 日本國王使와 제휴해 창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1463(세조9)년, 天龍寺 勸進船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 국왕사가 조선에 파견되었다. 正使에는 俊超과 副使에는 杻우시 본杻우(仰之梵高)라고 하는 선승이 기용되고 있었다[伊藤2002a, 제1부 제2장]. 그리고 이 국왕사에는 斯波義廉·京極生觀·澁川教直명의의 사절도 동행하고 있었으며, 조선에 건네진 아시카가 요시마사(足利義政) 국서의 문면에도 3씨 使送의 존재가 명기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국서는 교토로부터 이동 중에 개찬된 것이었다. 그것을 상징하듯이 이 국서에서는 조선국왕을 “폐하”라고 칭하고 있다. 아시카가 요시마사가 세조를 “폐하”라고 존칭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통상은 “殿下”를 사용). 요시마사에게 “폐하”라는 말의 사용은 조선국왕 세조에게 臣從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류의 표현을 이용한 서계는 위사 또는 쓰시마 소우씨가 조선에 가져온 서계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그 점에서도 이 국서가 소우씨에 의해 개찬되었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말할 수 있다. 위사 파견 세력은 조선국왕에게의 臣從 자세를 강조함으로써 상대측의 의혹을 불소시키고 후대를 획득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 때 국서 개찬에 관여했다고 추측되는 인물이 日本國王使 副使였던 仰之梵高(夢窓派 華藏門派)이다. [橋本1997a, 64쪽]그는 이후 조선으로부터 돌아오던 중, 소우 시게모토(宗成職)와 사다쿠니(貞國)에 붙여져 쓰시마에 머물게 되었고, 佐賀景德庵에서 서계나 문인을 발행하는 외교 업무를 담당하였다. 소우씨가 보다 레벨 높은 深處倭 명의의 위사나 僞王城大臣使, 최종적으로는 僞國王使를 순조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응분의 외교기술과 정보수집 능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그러한 서계의 기초나 개찬에는 선례나 관례를 답습해 수사기술을 구사하는 고도의 한문 능력이 필수였다.

소우씨에게는 조선 통교 무역 확대를 위해서도 이러한 능력을 가진 인적 기반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었다. 仰之梵高의 쓰시마 체류는 소우씨가 교토 오산(五山)계의 외교 문서 기초 능력과 중앙으로 직결하는 정보 네트워크(선종계의 네트워크)를 획득한 것을 의미하며, 다양한 위사창출을 가능케 했던 것이다[橋本1997a][伊藤2002b]. 또, 소우씨가 眞使였던 일본국왕사에 편승하는 형태로 국서를 개찬해(유형Ⅱ), 僞王城大臣使를 조선에 통교하게 한 패턴은 1448년에 하카타 상인이 일본국왕사에 배를 첨가해 무역하려고 시도한 사례와 매우 유사하다. 이 사실은 15세기 중반 玄界灘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위사 창출 테크닉이 숙성·공유되어 온 것을 의미하고 있다.

【서계에 보이는 美辭의 표현】

시기	서계명	美辭의 표현
享德 3 年(1454)		“皇帝陛下”
세조 6 年(1460)	僞宗像氏正書契	“義就上表曰 …” “爲是謹俱表”“臣義就”
세조 6 年(1460)	僞畠山義就書契	“義忠上表曰 …” “恭惟陛下”
	僞畠山義忠書契	“(日本)我國, 凡有官職者, 莫不事(朝鮮)大國”
세조 9 年(1463)	足利義政國書	“今又天龍滿堂之海衆, 蒙陛下庇蔭”
세조 10 年(1464)	宗成職書契(特送使·秦盛幸)	“今上皇帝”
성종 1 年(1470)	僞畠山義勝書契	“欽慕大國之仁政”
성종 1 年(1470)	僞伊勢政親書契	“今上皇帝”“扶桑殿下”
성종 1 年(1470)	僞山名教豐書契	“陛下”“我國皇源義政”“朝鮮國皇”
성종 1 年(1470)	宗貞國書契(特送使·豆老)	“陛下”“先是仙心天子”
성종 1 年(1470)	宗貞國書契(特送使·梵賀)	“先皇帝”“扶桑殿下”
성종 2 年(1471)	僞斯波義廉書契	“新王陛下踐祚”
성종 3 年(1472)	僞京極持清書契	“皇帝陛下”
성종 3 年(1472)	僞山名教豐書契	“皇帝陛下”“今上皇帝踐祚”
성종 3 年(1472)	僞大內政弘書契	“陛下”
성종 3 年(1472)	僞畠山義勝書契	“天子”
성종 3 年(1472)	僞畠山義就書契	“今皇帝”
성종 4 年(1473)	僞大內政弘書契	“皇帝陛下”“我殿下”
성종 4 年(1473)	宗貞國書契	“陛下”
성종 5 年(1474)	(特送使·宗茂勝, 皮古汝文)	

※ [高橋1987]을 참고로 해 작성.

세조 치세하의 1460년대 중반, 조선 역대 국왕 중에서는 드물게 불교 신자인 국왕이 諸寺院에 參詣하자 瑞祥現像이 종종 일어났다. 1466(세조 12)년 세조는 내조해 온 肥前 那久野 藤原賴永의 사송 壽蘭에 대해 일본국왕에게 축하사 파견을 요청하는 서계를 맡겼다. 그 후, 이것에 부응하는 형태로 1471(세조 17)년까지 불과 수년 사이(통교가 집중한 것은 1467-1470년)에 세조의 불교적奇瑞를 찬미하는 대량의 축하사가 일본에서 조선으로 도향했다. 이들 대량의 통교자들은 ④壽蘭·細川勝氏·祝賀日本國王使心苑東堂, ⑤祝賀使, ⑥壽蘭護送, ⑦宗貞國請이라는 4개의 종류로 구분지을 수 있는데, ⑦宗貞國請은 ⑤祝賀使가 조선측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등장한 것이며, 기본적으로는 동질의 것이었다. 그리고 많은 통교 명의를 조선측에 받아들여지기 쉬운 직함이 되어 있지만, 그 실재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初度通交者였다는 것, 受職人이나 세견선 定約者를 시작으로 해 평상시에는 빈번한 통교를 행하고 있는 쓰시마·이키의 인간이 全無하다는 것 등으로 보아 그들 통교의 주체는 모두 過海糧을 목적으로 한 쓰시마인으로(유형Ⅷ), 藤原賴永 使送 壽蘭(유형Ⅷ)이나

祝賀 日本國王使(유형Ⅵ)도 마찬가지로 소우 사다쿠니의 밑에서 조직적으로 창출된 위사이다[長2002b].

정권을 탈취한 세조는 즉위 이래, 항상 왕권을 강화하여 장엄한 수단을 모색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본래는 명 황제만이 실시하는 제천의례를 실시하는 한편, 명 황제를 遙拜하는 망궐례를 폐지하고, “夷”를 거느리는 황제를 방불케하는 것과 같이 “倭人”과 “野人”을 열석시켜, 朝賀禮와 會禮宴을 왕궁 내에서 상대하게 개최하고 있었다[桑野2002]. 불교적奇瑞現像의 선전과 일본국왕에게의 축하사 파견 의뢰도 확실히 세조의 왕권 장엄책의 일환이며, 쓰시마 소우씨는 세조의 기대를 통교권 확대의 호기라고 포착하여 교묘하게 이용했던 것이다.

덧붙여 오사 세즈코씨는 이전, 세건선 定約者로 유일하게 축하사를 보낸 시마즈 다다쿠니(島津忠國)에 대해서 진사라고 이해하고 있다. 소우씨가 조선에의 주요한 수출품인 남해 산물 획득하기 위해 사츠마의 항구를 지배하고 있던 타다쿠니(忠國)를 중요시했다고 하는 것이 그 이유이다[長節子2002b, 36-37쪽]. 그러나 남해 산물은 하카타 상인이나 사츠마 상인을 매개로 하여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는 문물이고, 15세기 중반에는 류큐-사츠마 관계의 악화에 따라 하카타 상인이 사츠마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류큐로 향하고 있었으며, 그 향로는 《海東諸國紀》에도 기록되고 있다[佐伯2003, 36-37쪽]. 사실은 시마즈 다다쿠니의 사송이야말로 眞僞 재고의 여지가 있다. 당시 분명히 薩摩・大隅・日向의 守護로서 시마즈 다다쿠니(初名은 貴久)는 실재했다. 그러나 시마즈씨는 무로마치期를 통해 “藤原”성을 자칭하고 있어 그가 대외적으로 “源”성을 자칭하고 있었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우며, “國王(足利義政)의 族親”이라고 하는 《海東諸國紀》源忠國條의 기재도 그 실태와 합치하지 않는다. 11년 후인 1478(성종9)년, 타다쿠니(忠國)의子였던 島津立久(源姓을 자칭)가 舍交老愁戒를 사절로 조선에 통교하고 있지만, 舍交老愁戒는 다른 때에 平方忠吉(→위사?)의 사송인으로도 되어 있다⁶¹⁾는 것을 고려하면, 시마즈 다다쿠니의 진위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체적으로 미나미큐슈 지역의 조선 통교자는 명의인이 사망하고 나서도 長期에 걸쳐 통교가 계속되거나(島津元久・島津持久・島津忠國・伊集院熙久 등), 諸氏の 실제 직함과 통교 명의의 직함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15세기 후반, 薩摩州에는 “大隅太守”를 자칭한 熙久(僞使), “日向太守”를 자칭한 盛久(僞使?), “市來太守”를 자칭한 國久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薩隅日三州太守”인 島津忠國・立久父子도 있었다. 이러한 자칭 가운데 국내 사료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大隅守熙久와 薩摩・大隅・日向 守護인 忠國・立久만이며, 日向守의 관직

61) 《성종실록》 7년 2월 병술조, 9년 2월 갑진조.

을 가진 사람은 전혀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제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시마즈 다다쿠니의 축하사는 위사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큐슈 서해안을 왕래하고 있던 사즈마 상인 주변 세력이 이 통교 명의인의 무역을 전개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유형Ⅵ, 유형Ⅶ, 유형Ⅷ).

1469(예종1)년 7월, 応仁・文明의 난에 연동한 기타큐슈(北九州) 지역의 동란을 틈타 소우 사다쿠니는 주군 관계에 해당되는 少貳頼忠과 함께 치쿠젠(筑前)에 진군하여, 오오우치(大内)씨 세력을 배제하고 하카타를 지배했다[佐伯1978, 319쪽]. 이것을 계기로 소우씨와 하카타 상인의 사이에 조선 통교 무역권을 매개로 한 경제적・정치적 밀접한 제휴관계가 발생했다[橋本2003]. 1450년대 이후, 소우씨는 深處倭 명의에 의한 위사 통교의 集積에 가세해 王城大臣使라는 위사도 창출하고 있었지만, 증대하는 위사 통교를 유지・전개하기 위해서는 쓰시마만의 수요공급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였고, 무역 물자의 조달이나 回賜品을 전매하는 시장으로서의 하카타는 중요한 지역이었다. 한편, 하카타 상인도 소우 사다모리(宗貞盛)의 하카타 철퇴 이후, 통제가 완비한 조선 통교의 場에서 문인 발급권을 가진 소우씨와 제휴해 그것을 토대로 삼아 통교권의 확보・확충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이 결과, 소우 사다쿠니는 하카타 상인과 융화적 관계를 맺기 위해 신규의 통교권으로서 王城大臣使를 앞으로 내세웠다. 다만, 이미 1450년대 후반부터 쓰시마인에게 실재 명의인이었던 王城大臣使에 의한 통교권(유형Ⅶ)이 부여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카타 상인에게 부여된 것은 가공 명의의 王城大臣使 통교권(유형Ⅷ)이었다. 1470(성종1)년을 획기로 대량으로 발생한 가공 명의의 王城大臣使는 応仁・文明의 난이라고 하는 일본 국내의 동란을 틈타는 형태로 하카타 상인에 의해 일임되어지고 있었던 것이다[橋本2003]. 또한 사다쿠니(貞國)가 치쿠젠 출병 중이었던 쓰시마는 (실직적)守護代인 宗盛直・職盛父子가 장악하고 있었다. 이 사이에 문인・서계의 발급권을 획득한 그에게는, 키쿠치(菊池)씨⁶²⁾・요부코(呼子)씨・코우다(神田)씨 명의의 위사 통교권 所務者가 치쿠젠 출병이라는 틈을 타 위사를 파견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통교권의 분열하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1471(성종 2)년 12월 소우 사다쿠니의 歸島에 따라 종식되었다[橋本2002・2003].

이상과 같이 소우 사다쿠니의 하카타 출병을 계기로 사다쿠니와 하카타 상인의 제

62) 菊池씨는 조선으로부터 “菊池殿”이라고 호칭되었는데, 당초에는 문인의 대상 밖에 위치해 있었으나, 15세기 전반에 보이는 통교 사례는 적었으며[青木1993], 아마도 菊池씨의 조선 통교에 대한 지향성은 다른 諸氏에 비해 그리 높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菊池씨의 조선 통교는 1450년 이후 갑자기 위사 명의에 의해 증가했다.

휴가 명확화되었고, 이후의 조선 통교에 대해 양자의 협조관계가 여기저기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橋本1997a, 66-67쪽][伊藤2002b, 59-60쪽]. 예를 들면, 하카타 상인 藤安吉의子和 宗茂信(宗金嫡孫)의受職이 사다쿠니의 청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는 것,⁶³⁾ 사에몬 사부로(三末三甫羅(宗金の孫)가 偽畠山殿 사승으로서 도해한다거나 立石國長으로부터 세전선을 분여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⁶⁴⁾四郎三郎(道安의子)이 쓰시마 佐護郡代 宗國久 사승으로서 도해하고 있다는 것⁶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宗茂信은 偽畠山義勝 사승이나 偽日本國王使의 指路船主 혹은 都船主로서 몇 번이나 조선에 도해하고 있었으며,⁶⁶⁾ 소우씨와 하카타 상인의 밀접한 제휴를 상징할 만한 인물이었다.

또, 당시 일본의 정식적인 외교 교섭이나 외교 문서 기초는 선승에 의해 담당해지고 있었다. 조선통교에 대해서도 외교 문서의 휴대는 필수였으며, 日本國王使나 巨僧使 등의 사절은 기본적으로 선승이 정사나 부사로서 기용되고 있었다[伊藤2003]. 위사 통교에는 하카타 상인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외교 승려의 존재도 불가결했던 것이다. 이미, 소우 시게모토(宗成職)의 시대에 위사 통교를 지지하는 선승으로서 仰之梵高的 존재가 있었지만, 소우씨와 하카타 상인의 제휴가 깊어진 1470년 이후에는 하카타의 聖福寺를 중심으로 하는 선종 세력(幻住派)이 위사 통교를 주체적으로 지지하는 인적 기반이 되었다. 카마쿠라(鎌倉)期の 창건 이래, 하카타 상인과 밀접한 聖福寺는 하카타 통교 무역의 거점으로서 군림해 무로마치 막부나 오오우치(大內)씨의 외교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우씨-하카타 상인에 의한 위사 통교가 확대되었던 당시에 명확히 위사 통교를 지지하는 인적 기반이라고 하는 점에서 磐石의 체제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橋本1998, 5쪽/14-15 쪽][伊藤2002 a, 2002b].

1470년대 이후, 僞王城大臣使의 통교권을 획득한 하카타 상인은 한층 더 새로운 통교권의 확보에 움직이고 있었다. 1471(성종2)년, 하카타 상인 平左衛門尉信重 등이 琉球國王 尚德 명의의 사절로서 조선에 도향하여 근년 횡행하고 있는 외교문서 위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선 정부에 割符制의 도입을 제하고 있었다. 割符라는 것은 류큐와 조선에 할부를 2매씩 분치해 두고 좌우의 도장을 찍은 자국을 조합하는 것으로 사절의 眞僞를 분별하는 符驗(勘合)이었으며, 조선측은 이 제안을 기분 좋게 받아들였다.

63) 《성종실록》 4년 1월 신해조. 《중종실록》 9년 11월 기미조.

64) 《성종실록》 7년 7월 정묘조.

65) 《연산군일기》 3년 10월 임오조.

66) 《성종실록》 11년 7월 계미조, 《중종실록》 9년 11월 갑신조.

실은 이 할부제를 제안한 노부시게(信重)의 국왕사는 류큐측의 정식 요청을 받은 사절이었지만, 도중에 국서가 개찬되어져 노부시게측으로 사행의 주도권이 이동되고 있었다(유형Ⅲ). 조선에 파견되는 琉球國王使는 종래부터(世宗期부터) 쓰시마나 큐슈인(하카타 상인 등)이 하청 받거나 류큐인이 그들의 배에 편승하는 통교 형태로 전개되고 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쓰시마나 큐슈인이 류큐측의 국서를 개찬하거나 僞琉球國王使를 창출하는 일도 있었지만[田中1975, 제2부 제2장], 노부시게 등이 제안한 할부제는 이러한 琉球國王使를 악용해 스스로의 무역 확대를 기도하고, 조선측에 국서의 개찬이나 僞琉球國王使의 실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고안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橋本1997b]. 이 결과, 하카타 상인은 유연하게 琉球國王使(위사)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 1478(성종9)년에는 久辺國主 李獲의 사자라고 칭한 사츠마인 関富라고 하는 자가 조선에 대장경을 구청해 왔다.⁶⁷⁾ 이 사절에게는 “薩州의 守護代·官占貞久”라는 인물도 선박 1척을 침선하여 동행시키고 있었다.⁶⁸⁾ 久辺國 李獲은 이 4년 후에도 中務衛라는 자를 파견하고 있다.⁶⁹⁾ 이러한 사절은 사츠마 상인이 久辺國이라는 가공의 나라를 만들어 대장경을 획득하려 했다고 여겨지고 있다[村井1988, 343-348쪽](유형Ⅸ). 그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당시 조선 통교의 본연의 자세를 고려하면, 거기에 하카타 상인이나 쓰시마 세력의 협력도 있었다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먼저 하카타 상인 노부시게(信重) 등이 고안한 할부제는 할부제를 준수하지 않는 같은 하카타 상인이나 야지로우(也次郎)의 僞琉球國王使의 행동에 의해 1490년 전반에 붕괴해 버렸다[橋本1997 b, 88-91 쪽]. 이러한 사실은 조선 통교권을 둘러싸고 하카타 상인이 반드시 일치단결하고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내부에서 어떤 주도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술한 久辺國 李獲의 사송은 할부제에 의해 琉・朝 통교로부터 배제된 세력이 琉球國王使 이외에 활용할 수 있는 통교권을 모색한 결과 발생한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僞王城大臣使의 통교권에 의해 매우 유리한 무역을 전개하고 있던 하카타 상인은 그 후 통렬한 타격을 받는다. 1474(성종5)년, 무로마치 막부측의 제안에 의해

67) 《성종실록》 9년 11월 경신조, 12월 무자조.

68) 《성종실록》 13년 윤9월 경진조. 당시 미나미큐슈에서 守護代를 자칭한 것은 大隅國衛를 누르고 있던 本田씨밖에 확인할 수 없다. 또 島津家の 通字 “久”를 밑에 붙인다는 것은 守護家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당히 격이 높은 家の 사람만이다(新名一仁씨의 교시). 즉, “貞久”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미나미 큐슈의 제사정을 고려해서 교묘하게 창출해 낸 위사를 서포트하는 가공 명의였다고 생각한다.

69) 《성종실록》 13년 2월 병오조.

日本國王・王城大臣 명의의 위사 통교를 막기 위한 符驗(牙符) 제도가 조선측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日本國王使 正球에 의해 막부로 가져와진 牙符는 그 후 1482(성종13)년의 日本國王使 榮弘이 사용한 결과, 牙符에 의한 通交査証 제도가 확립되었다[橋本1997a, 50-51쪽/69-70쪽]. 확실히 이 때에 國王使 榮弘과 보조를 맞춘 듯이 “夷千島王遐叉”의 사자라고 칭하는 宮內卿이라는 인물이 조선에 대장경을 구청하고 있다.⁷⁰⁾ 이 사절도 전술한 久辺國 李獲과 마찬가지로 가공의 나라를 만들어 대장경을 획득하려고 했던 것인데[村井1988, 339-343쪽](유형Ⅸ), 그 파견에 이르는 배경으로서 牙符制의 발효에 따라 통교 명의의 감소를 두려워 한 위사 파견 세력(하카타 상인들인가?)이 새로운 통교 명의(통교권) 획득을 위해서 움직인 것은 아닐까하고 상정되고 있다[橋本2003].⁷¹⁾ 그러나, 이 시도는 결국 실패하였고, 이후 하카타 상인에 의한 僞王城大臣使의 통교도 두절되었다.⁷²⁾ 이와 같이, 1470년대 이후 소우 사다쿠니와의 제휴를 계기로 확대된 하카타 상인의 조선 통교권은 우선 1480년대 전반에 牙符制의 시행에 의해 僞王城大臣使의 통교권이 없어지게 되었고, 1490년대 전반에는 割符制의 붕괴에 의해 僞琉球國王使의 통교 보장 제도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이 사태를 타개한 것은 다름 아닌 일본 국내의 정치적 동란이었다. 즉, 1493(明應2)년에 발발한 明應의 정변 후, 장군직 복귀를 목표로 한 아시카가 요시타네(足利義植, 初名은 義材, 이후 義尹, 義植으로 改名. 本稿에서는 義植으로 통일)은 에치젠(越前) 아사쿠라(朝倉)씨나 周防 오오우치(大内)씨 밑에 몸을 의지해 두고 보유하고 있던 외교권(日明勘合・日朝牙符)을 토대로 구심력을 높이려고 했다. 이 결과, 큐슈의 제세력에게 日明勘合이나 日朝牙符가 잘려 팔려지게 되었기 때문에 위사 파견 세력은 아부를 획득한 오오우치(大内)씨나 오오토모(大友)씨와 제휴하는 것으로서 다시 日本國王이나 王城大臣 명의의 위사를 파견할 수 있게 되었다. 1501(연산군7)년, 僞日本國王使 弼中道德은 오오우치씨가 획득한 아부를 활용해 조선에 도항하고 대장경을 획득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이후, 위사파견 세력은 牙符나 하카타를 지배하는 오오우치씨 및 오오토모씨의 의향을 어느 정도 가미하면서 위사 통교를 계속할 수가 있었다[橋本1998, 4-7쪽]. 그러나 이러한 위사 통교 체제는 1510(중종 5)년 三浦의 난 발발에 의해 단번에 붕괴한 것이다.

70) 《성종실록》 13년 4월 정미조, 동월 계해조, 5월 경진조.

71) 「夷千島王遐叉」의 파견 주체로서 쓰시마인을 상정하는 長節子씨의 견해가 있는데[長節子2002a, 제2부 제2장], 본고에서는 橋本雄씨의 해석[橋本2003]에 동조했다.

72) 1479(성종10)년에는 大内殿使 瑞興이 조선측에 “通信符”에 의한 엄밀한 査證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후 大内殿使의 위사도 단절되었다[伊藤2003].

3) 16세기-17세기 전반의 위사 통교

끝으로 16세기-17세기 전반(柳川一件까지)의 日・朝 통교에 보이는 위사 통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해 두겠다. 三浦의 난 후, 빠른 시일 안에 조선 통교 부활을 간절히 바라는 소우씨는 僞日本國王使를 파견해 교섭에 임한 결과, 壬申約定을 성립시키기는 했지만, 15세기 이래 획득해 온 여러 가지 통교권의 대부분을 상실했다. 이후, 16세기 소우씨는 조선측과 교섭을 반복하면서 서서히 深處倭 명의의 통교권이나 受職人 통교권 등을 부활시켜 갔다. 宗家旧藏의 圖書・木印群 및 「朝鮮送使國次之書契覺」 등의 쓰시마측 사료가 대변해주고 있듯이 이러한 통교권은 쓰시마 세력에 의해 역할이 일임되고 있었던 위사였다(유형Ⅵ, 유형Ⅶ, 유형Ⅷ). 16세기말, 일본에 도요토미(豊臣) 정권이 성립되자 히데요시(秀吉)는 조선 국왕의 일본 방문 요청을 소우씨에게 요구했다. 소우씨는 僞日本國王使를 조선에 파견해(유형Ⅷ), 히데요시의 요청을 통신사의 파견 요청으로 살짝 바꾸어 교섭하였다. 그 결과, 약 150년 만에 통신사의 일본 방문이 다시 실현되었다. 이에 따라 소우씨가 壬申約定 이래 재구축 해 온 위사 파견 체제가 붕괴했다. 또, 쓰시마 소우씨는 僞日本國王使의 존재를 히데요시로부터 은폐하기 위해 조선 국왕 李昞(宣祖)의 국서를 개찬했다. 도요토미 정권은 독자적인 외교 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조선 외교를 소우씨에게 맡겼기 때문에 15세기 이래 위사 창출에 관련된 능력과 기술은 쓰시마에 온존되었다. 그 후, 壬辰・丁酉倭亂(文祿・慶長の役)이 발발해 日・朝 통교는 단절했다. 戰後, 조선 통교 재개를 기도한 소우씨는 다시 僞日本國王使를 파견해 조선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를 꾀했다. 그 결과, 조선으로부터 회답겸쇄환사가 토쿠가와(徳川) 정권에 파견되었지만, 여기에서도 僞日本國王使의 존재를 은폐하기 위해 국서를 개찬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己酉約條가 성립해 日・朝 국교는 부활하게 되었지만, 이후 약 30년간 柳川一件의 발발까지 양국 국왕사의 국서는 쓰시마에 의해 계속적으로 개찬되었다. 柳川一件 후에 토쿠가와 정권은 以酌庵 輪番制度를 제정하였는데, 이로써 중세적 日・朝 통교의 형태는 완전히 종언을 맞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村井1969][田代1983][田代・米谷1995][米谷1997a][米谷2002][伊藤2002b][伊藤2002c].

맺음말

본고에서는 14세기말-17세기 전반(柳川一件)에 이르는 日・朝관계사 실상을 위사의 시점으로부터 재구축하여 고찰해 보았다. 이상의 고찰에 의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4세기말-17세기 전반의 日・朝관계는 분명히 “僞使의 時代”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였다. 중세 日・朝 관계에서 위사의 발생은 조선 초기에 왜구 대책의 일환으로 조선 정부가 무조건 다수의 일본측 통교자(지역의 수장뿐만 아니라)를 받아들여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다가, 世宗期 이후, 그 경제적 부담 증대의 회피를 목적으로 서계나 문인에 의한 대일 통교 통제책을 도입해 서서히 일본측 통교자들의 조선 통교 무역을 억제했던 것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 이 결과, 조선 통교를 강하게 지향한 일본측 통교자(특히 그 중심이 쓰시마 소우씨나 하카타 상인)는 조선측의 통교 통제를 **합법적으로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위사 통교라고 하는 통교 형태를 낳았던 것이다. 특히, 조선측이 통교 통제에 대한 비장의 카드로서 쓰시마 도주가 발행하는 문인을 중요시 했다는 것은(이 제도 자체는 소우씨가 조선 정부에 제안한 것이지만…), 소우씨(및 하카타 상인 이외)에 의한 위사 통교를 스스로의 제도에 의해 보장해 버린 것이 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조선 정부는 위사의 존재를 파악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위사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경우에도 그것이 왜구로 변질되는 것을 두려워했으며, 동시에 스스로를 중화라고 인식하는 대국 의식에 의해 위사를 완전하게 거부할 수 없었다.

또, 종래에 중세 후기(조선 전기)의 日・朝 관계는 明 황제와 日本國王(室町殿) 간에 통교가 한정된 일원적인 일명관계였던 것에 반해 조선과 일본의 제세력이 개개의 다양한 통교 관계를 형성했다는 다원적인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것은 조선 정부가 왜구 회유정책의 일환으로서 다양한 일본측 통교자를 받아들인 결과이며, 확실히 이러한 견해는 핵심을 찌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다양한 통교 명의인 중에는 쓰시마 세력이나 하카타 상인에 의해 창출된 매우 많은 위사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海東諸國紀》에 기록된 대부분의 일본측 통교자가 실제로는 위사 파견 세력에 의해 만들어진 가짜이며, 실태와는 크게 동떨어진 허상이라는 것[長2002b]을 고려한다면, 다원적이라고 하는 중세 日・朝 관계의 이해도 그 **내실까지도 무비판적으로 다원적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다음으로 위사의 존재가 조선 왕조에게 준 영향도 생각해 보겠다. 우선,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이 경제적 영향일 것이다. 조선 정부가 世宗期 이후에 점차적으로 통교 통제를 개시한 것은 일본측 통교자를 접대하는 경제적 부담에 대한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위사 통교는 그 통제를 합법적으로 회피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위사의 존재는 조선측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었다. 또, 통교 통제에 의해 만들어진 세건선 定約은 원래 深處倭 명의의 통교를 한정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이 定約의 존재에 의해 위사 名의를 사용한 歲遣船分의 접대로나 過海糧 등의 지출이 확실하게 되었다. 더욱이 위사는 무역 확대를 목적으로 창출되고 있어 《海東諸國紀》「朝聘應接紀」의 규정에 근거해 후대하지 않을 수 없었던 日本國王使나 巨酋使의 위사는 조선측의 부담이 매우 컸다. 이러한 조선측의 부담이 국가의 재정이나 인민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은 그리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또, 위사의 존재는 정치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443(세종25)년의 통신사 이래, 조선측으로부터 일본 본토로 향한 실제적인 遣使가 끊겨 日・朝 통교는 일본으로부터의 일방적인 통교 상태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태는 조선측의 의식 문제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조선 사절이 파견되었을 경우, 위사의 존재가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위사 파견 세력의 회책에도 근거를 두고 있다[橋本1997a, 68쪽]. 그 결과 조선 정부는 스스로 일본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을 상실하게 되었고, 위사 파견 세력을 매개로 매우 편향된 일본정보에만 의존하게 되었기 때문에 허상으로서 일본을 계속 보게 되었다[米谷1997b]. 이 일이 16 세기 말기 일본 국내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통일 정권이 탄생했을 때, 조선 정부는 일본의 국내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이해하지 못한 채 히데요시의 진심을 오인하여[米谷2003], 침략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들어가는 원인으로서는 나타난 것이다.

그럼, 조선 왕조에게 위사라는 것은 어떤 존재였던 것일까. 물론,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보면, 대량의 위사는 환영할 수 없는 사절이었다는 점이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심스러운 사절, 또는 분명한 위사라도 조선측이 완전하게 거부할 수 없었던 배경으로서 그 하나는 남쪽 변경의 방비라고 하는 군사적 문제가 있었다. 확실히 위사의 수용은 일종의 왜인・왜구대책으로서 생각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게다가 위사는 조선국왕 왕권의 장엄화에 크게 기여하는 “朝貢分子”로서도 자리매김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正朝・冬至에 행해지는 대명의례・망궐례에 연이어 왕궁의 正殿에서 실시된 朝賀禮와 회례연에 모이는 외국의 백성 “왜인과 야인”은 확실히 조선국왕의 화이의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필요 불가결의 존재였다[桑野2004].⁷³⁾ 하물며 다양한 직함을 칭하는 대량의 일본측 사절은 왕권을 보다

73) 桑野瑩治씨는 조선초기 왕궁 내부에 중국고대의 元會儀禮(朝賀禮와 그 후의 연회)의 疑

장엄화하는 존재이며, 그 점으로부터 말하면 사절의 진위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오히려 보다 유리한 경제적 이익을 향수하기 위해서 조선국왕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위사의 언동은 조선국왕의 위덕을 보다 크게 선전하는 것으로서 인식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 의미로, 위사를 포함한 일본측 사절은 조선 외교 질서에 명확하게 자리매김되고 있어 양자의 이해관계는 일치하고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본고에서 고찰해 온 위사라고 하는 事象은 14세기말-17세기 전반 日・朝 관계의 場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부연해 두겠다. 예를 들면, 14세기 후반 日・明通交의 場으로 눈을 돌려 본다면, 일본으로부터 “良懷” 명의로 통교한 사절 속에는 北朝方(室町幕府・足利義滿)의 위사가 섞여 있었다. 이것은 명으로부터 책봉을 받은 南朝方의 征西府懷良親王이 日・明通交 貿易을 통해서 명과 밀접하게 결부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카가 요시미치(足利義滿)가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橋本1998b, 23-28쪽]. 또, 15세기 중엽 명과 북방 민족(몽골)간의 통교 사례도 보고 싶다. 1442년(正統7)년의 사례에 “한때에 오이라트(瓦剌)의 使臣 2천여명, 大同에 이르렀다. 때를 旬日로 하여 또한 100여명이 에센(也先;역자주-明代 몽골의 오이라트 部族의 長)의 사신을 칭하고 관문을 두드려 入貢하려고 한다.”⁷⁴⁾고 있어, 오이라트(瓦剌)의 사신 2천명과 에센(也先)의 遣使를 사칭 했다고 생각되는 무리 100여명이 조공을 요구해 大同에 오고 있었다. 당시의 大同總兵 官武進伯 朱冕 등은 에센(也先)을 칭하는 이들에 성격에 대해 의문을 품었지만, 북경으로부터의 勅諭에 “그들도 이미 遠來의 理(사절)가 되므로, 잠시 관용에 따라 勅을 기다리고, (勅이) 도달하면 즉시 관문을 열어 그들 들여보내라.”고 있었기 때문에 大同에서 돌볼게 되었다. 이후, 몽골로부터 명의 大同에는 다수의 조공사가 방문하였고, 다수의 사신단이 북경을 왕복했기 때문에 명측의 경제적 부담이 증대해 통교 통제의 도입이 모색되어지고 있었다[川越2003, 제5장]는 것은 확실히 중세 日・朝 통교의 場과 유사한 전개라고 말할 수 있다.

분명히 위사라는 것은 동아시아 통교권에서 국가 상대의 통교 무역을 요구할 때에 항상 활용된 매우 유리한 한 개의 통교 형태였다고 말할 수 있다. 동아시아 제국가에서는 중화사상 아래 국가 내에서 중화를 표방하여 표면적으로 또 체면으로서 이민족

似空間을 상정하고 있다[桑野 2004, 125쪽]. 元會儀禮란 황제-중앙 관료 간의 군신관계 再認・화합을 중핵으로 황제와 지방정부 간의 공납-종속관계, 및 황제와 외국 제민족 간의 공납-복속관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渡邊 1996, 192쪽].

74) 《(明)영종실록》 正統7년 10월 무술조.

등 국외의 주변 人民의 來朝를 국가나 수장의 威光, 또는 德의 확대라고 인식해(德化主義), 왕권을 장엄하게 하는 것으로서 內政에 활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그 국가 범위 밖의 사람들이 해당 국가에 통교하려고 했을 때, 아주 좋은 이용 수단이 되었다. 중세 日・朝 통교의 場에서 위사가 스스로 朝貢使와 같은 행동을 하여, 조선국이나 국왕의 德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 환심을 산 외교수법은 확실히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중세 日・朝 관계에서의 위사도 동아시아 통교권 안에서는 결코 특이한 통교 형태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지극히 규모가 크고, 조직적・항상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고 하는 점에서는 명확하다.

끝으로 간단하기는 하지만, 先學의 연구 성과도 가미하여 중세 日・朝 통교에서 위사의 판단 기준을 나타내 두겠다. 물론, 여기에 보이는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눈대중에 지나지 않으며, 각 통교자의 진위는 그 통교자가 놓여진 역사적 상황을 가미해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위사 속에는 통교 명의인의 의도를 어느 정도 반영했던 경우도 확인되고 있어 단순한 진위 판단만 하더라도 실상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덧붙여 둔다.

【위사의 판단 기준】

[日本國王使의 경우]

*15세기

- 國書(書契)의 형태

國書의 文中에서 “황제”“폐하” 등 이른바 “조선 대국관”을 표출하거나 명의 연호를 사용하는 등, 당시 國書의 규범과 다른 경우.

- 使送人의 형태

俗人인 경우[伊藤2003].

*16세기 이후

- 기본적으로 僞日本國王使.

[巨酋使의 경우]

*王城大臣使

- 초기 斯波씨 통교를 제외하고는 僞使.

*大內殿使

- 15세기 중엽 일부의 사절, 應仁・文明의 난 당시의 사절, 16세기 후반(오오우치 씨 멸망 후)의 통교는 僞使[伊藤2003].

*그 외의 巨酋使

- 三浦의 난 후의 통교는 僞使.

*書契의 형태

- 통교자가 조선에 제출하는 書契의 文中에 “황제”“폐하” 등 이른바 “조선 대국관”을 표출하여 조선측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경우.

*통교 명의 형태

- 통교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경우나, 실재자라도 상황적으로 조선 통교를 실시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경우.

*使送人 형태

- 俗人인 경우[伊藤2003].

[深處倭의 경우]

- 三浦의 난 후의 통교는 僞使.

*書契 형태

- 통교자가 조선에 제출하는 서계의 문중에 “황제”“폐하” 등 이른바 “조선 대국관”을 표출하여 조선측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경우.

*통교 명의 형태

- 통교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경우나, 실재자라도 상황적으로 조선 통교를 실시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경우.

*통교 시기 형태

- 1450년대 이후에 통교를 개시하는 통교 명의인, 15세기 전반에 통교력이 회소하여 1450년대 이후에 통교를 증대시킨 통교 명의인, 15세기 중엽에 조선 통교로의 지향성을 저하시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450년대 이후 통교를 증대시킨 통교 명의인의 경우.

[琉球國王使의 경우]

- 15세기 중반 넘어서 瑞祥 祝賀使는 僞使

*國書 형태

- 國書의 형식이 서계의 경우는 위사, 眞使는 기본적으로 咨文을 사용[橋本1997b]

*使送人 형태

- 非琉球人의 使送人(쓰시마 세력이나 하카타 상인 등)의 경우는 國書가 개찬되어 사절의 眞意가 변용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보주】※부산 회의에서의 보고에 대한 논의를 받아, 정정・변경・추가한 주요 개소

〈보주①〉

본고의 논제를 「中世日朝關係における僞使の時代」에서 「日朝關係における僞使の時代」로 변경했다. 당초의 논제 앞에 붙인 “중세”는 일본사의 시기 구분에 근거한 용어 사용이며, 조선사에서 말하는 “중세”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삭제했다.

〈보주②〉

당초는 【위사의 유형】으로서, I. 眞使便乘型, II. 單純詐稱型, III. 眞使請負通交型, IV. 名義借通交型, V. 名義讓渡通交型, VI. 通交名義詐稱型A, VII. 通交名義詐稱型B, VIII. 架空名義型, IX. 架空國家型으로 구분했다. 그러나, 이 구분에서는 I~IV와 같이 완전한 위사라고 하기에는 주저되는 회색존의 통교패턴까지 완전한 위사 범주에 넣

어 논하게 되므로 통교실태의 정확한 표기로서는 불완전했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유형 그 자체를 14세기말기~17세기 전반의 일·조통교전체의 모델 패턴(【일·조통교의 모델 패턴】)을 나타내는 가운데에서 위사의 각종 유형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것에 의해 진사와 위사의 틈새에 자리하는 회색존의 통교유형을 정확하게 자리매김 시키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생각된다.

〈보주③〉

당초는 왜인 회유책의 결과 “조선측의 경제적 부담은 방대화하였고, 국가재정을 극도로 압박했다.”라고 표현했지만, “극도로”라고 하는 표현을 삭제했다.

〈보주④〉

당초는 제3절 「구주탐제 시부카와씨의 제휴」, 제4절 「시부카와씨 몰락 후의 동향」이라고 나누고 있던 것을 제4절을 제3절 안에 삽입하여 논할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보주⑤〉

문인의 制가 전면적으로 도입된 다음 해 1439(세종21)년의 통교상황의 이상함에 대해, 당초는 문인의 制를 회피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 통교의 가능성을 모색하려고 한 왜인들의 활동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 이상한 통교상황의 확인은 문인의 制의 도입에 의해, 조선측이 엄밀하게 도항자의 실태를 사증한 결과, 종래의 통교상황이 백일하에 노출된 결과라고 정정했다.

〈보주⑥〉

【15세기의 進香 목적 사절】이라고 하는 일람표를 추가했다.

〈보주⑦〉

대마도의 留守政府의 실상에 대해 새롭게 게재 발표된 《한일관계사연구》의 [橋本2003]의 견해에 따라 변경했다.

〈보주⑧〉

【참고 문헌】 안에 부산 회의후에 발표된 [橋本2003]를 추가했다.

【참고문헌】 50音順

- 青木勝士, 1993, <肥後菊池氏の對朝交易-《李朝實錄》, 《海東諸國紀》, 記事の分析から->
《戰國史研究》, 第26号
- 荒木和憲, 2003, <對馬島主宗貞盛の政治的動向と朝鮮通交> 《朝鮮學報》, 第189輯
- 伊藤幸司, 2002a, 《中世日本の外交と禪宗》, 吉川弘文館
- , 2002b, <中世後期における對馬宗氏の外交僧> 《年報朝鮮學》, 第8号
- , 2002c, <現存史料からみた日朝外交文書・書契> 《九州史學》, 第132号
- , 2003, <大内氏の朝鮮通交と僞使問題> 第97回山口縣地方史研究大會發表用レジュメ
- 長節子, 1987, 《中世日朝關係と對馬》, 吉川弘文館
- , 2002a, 《中世 國境海域の倭と朝鮮》, 吉川弘文館
- , 2002b, <朝鮮前期朝日關係の虛像と實像-世祖王代瑞祥祝賀使を中心として-> 《年報朝鮮學》, 第8号
- 川越泰博, 2003, 《明代長城の群像》, 汲古書院
- 川添昭二, 1978, <九州探題の衰滅過程> 《九州文化史研究所紀要》, 第23号
- , 1996, 《對外關係の史的展開》, 文獻出版
- 黑田省三, 1971, <中世對馬の知行形態と朝鮮貿易> 《國士館大學人文學部紀要》, 第3号
- 桑野榮治, 2003, <朝鮮世祖代の儀禮と王權-對明遙拜儀禮と園丘壇祭祀を中心に-> 《久留米大學文學部紀要 國際文化學科編》, 第19号
- , 2004, 《平成13年~平成15年度科學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C)(2))研究成果報告書
・高麗末期から李朝初期における對明外交儀禮の基礎的研究》, 久留米大學文學部
- 小葉田淳, 1941, 《中世日支通交貿易史の研究》, 刀江書院
- 佐伯弘次, 1978, <大内氏の筑前國支配-義弘期から政弘期まで-> 川添昭二編 《九州中世史研究》, 第1輯, 文獻出版
- , 1985, <大内氏の博多支配機構> 《史淵》, 第122輯
- , 1987, <中世都市博多の發展と息浜> 川添昭二先生還曆記念會編 《日本中世史論攷》, 文獻出版
- , 1992, <永享12年少貳嘉賴赦免とその背景> 地方史研究協議會編 《異國と九州-歷史における國際交流と地域形成-> 雄山閣出版
- , 1994, <中世後期の宗像氏と朝鮮> 川添昭二・網野善彥編 《中世の海人と東アジア》, 海鳥社
- , 1996, <中世都市博多と<石城管事>宗金> 《史淵》, 133輯

- _____, 1999, <室町期の博多商人宗金と東アジア> 《史淵》, 第136輯
- _____, 2003, <室町後期の博多商人道安と東アジア> 《史淵》, 第140輯
- 關周一, 1997, <室町幕府の朝鮮外交-足利義持・義教期の日本國王使を中心として-> 阿部猛編 《日本社會における王權と封建》, 東京堂出版
- _____, 2002, 《中世日朝海域史の研究》, 吉川弘文館
- 高橋公明, 1982, <外交文書、「書」・「咨」について> 《年報中世史研究》, 第7号
- _____, 1987, <朝鮮遣使ブームと世祖の王權> 田中健夫編 《日本前近代の國家と對外關係》, 吉川弘文館
- _____, 1992, <外交称号, 日本國源某>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 史學38
- 田代和生, 1983, 《書き替えられた國書 —徳川・朝鮮外交の舞台裏—》, 中公新書
- 田代和生・米谷均, 1995, <宗家旧藏「図書」と木印> 《朝鮮學報》, 第156輯
- 田中健夫, 1959, 《中世海外交渉史の研究》, 東京大學出版會
- _____, 1975, 《中世對外關係史》, 東京大學出版會
- _____, 1982, 《對外關係と文化交流》, 思文閣出版
- 田村洋幸, 1972, <室町前期の日朝關係-14世紀末-15世紀前半における僞使を中心として-> 福尾教授退官記念事業會編 《日本中世史論集》, 吉川弘文館
- _____, 1967, 《中世日朝貿易の研究》, 三和書房
- 外山幹夫, 1982, 《大名領國形成過程の研究-豊後大友氏の場合-》, 雄山閣出版
- 中村榮孝, 1965, 《日鮮關係史の研究》, 上卷、吉川弘文館
- _____, 1969, 《日鮮關係史の研究》, 下卷、吉川弘文館
- 橋本雄, 1997a, <中世日朝關係における王城大臣使の僞使問題>《史學雜誌》, 第106編第2号
- _____, 1997b, <朝鮮への「琉球國王使」と書契・割符制-15世紀の僞使問題と博多商人-> 《古文書研究》, 第44・45合併号
- _____, 1997c, <「遣朝鮮國書」と幕府・五山 —外交文書の作成と發給—> 《日本歴史》, 第589号
- _____, 1998a, <室町・戰國期の將軍權力と外交權-政治過程と對外關係-> 《歴史學研究》, 第708号
- _____, 1998b, <室町幕府外交の成立と中世王權> 《歴史評論》, 第583号
- _____, 2002, <肥後菊池氏の對外交流と禪宗・港町> 《禪文化研究所紀要》, 第26号
- _____, 2003, <宗貞國の博多出兵と僞使問題-《朝鮮遣使ブーム》論の再構築に向けて-> 《朝鮮王朝實錄》, からみた日本と朝鮮》, 韓日文化交流基金・韓日關係史學會
- _____, 2004 <眞贋のはざまに-情報論としての僞使問題から-> 《平成12年度~平成15年度科學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A)(1))研究成果報告書・8-1 7世紀の東アジア地域に

における人・物・情報の交流-海域と港市の形成, 民族・地域間の相互認識を中心に-》

(上)東京大學大學院人文社會系研究科

藤川誠, 1999, <石見國周布氏の朝鮮通交と僞使問題> 《史學研究》, 第226号

本多美穂, 1988, <室町時代における少貳氏の動向 —貞頼・滿貞期—> 《九州史學》, 第91号

増田勝機, 1970, <室町期に於ける薩摩の對朝鮮貿易> 《鹿兒島短期大學研究紀要》, 第5号

松尾弘毅, 2002, <中世後期における壹岐松浦党の朝鮮通交> 《九州史學》, 第134号

——, 2003, <中世日朝關係における後期受職人の性格> 《日本歴史》, 第663号

——, 2004, <中世日朝關係における五島諸氏と通交体制> 《東アジアと日本》 創刊號

村井章介, 1988, 《アジアのなかの中世日本》, 校倉書房

——, 1995, 《東アジア往還 —漢詩と外交—》, 朝日新聞社

米谷均, 1997a, <16世紀日朝關係における僞使派遣の構造と實態> 《歴史學研究》, 第697号

——, 1997b, <漂流民送還と情報伝達からみた16世紀の日朝關係> 《歴史評論》, 第572号

——, 2002, <文書様式論から見た16世紀の日朝往復書契> 《九州史學》, 第132号

——, 2003, <朝鮮侵略前夜の日本情報> 日韓歴史共同研究委員會第2分科會東京會議報告
論文

渡辺信一郎, 1996, 《天空の玉座-中國古代帝國の朝政と儀禮-》, 柏書房

토론록취문

- 주 제 : 일·조 관계에서 僞使의 시대
- 발표자 : 伊藤幸司 委員
- 일 시 : 2004. 3. 14(10:00-12:30)
- 장 소 :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 회의실
- 참석자 :
 - 한국측 : 손승철, 조광, 정구복, 한문중, 홍성덕, 박재광, 장순순
 - 일본측 : 吉田光男, 田代和生, 六反田豊, 伊藤幸司, 米谷均

토론문

조광: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래 관례대로라면 40분씩 발표했는데, 한 13분 정도 추가를 해 가지고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토 발표자에 대해서 충분히 발표를 할 기회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 합동회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양국 국가 모두가 합의한 내용을 실천하는 것도 있지만, 모두 여기에는 연구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자의 목표는 자신의 연구 논문이 가지고 있는 완성도를 높이는 데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발표한 연구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토론에 참여하는 상대방들의 의견을 좀 더 충분히 듣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측 토론자들의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한된 시간이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혹시 일본측 연구자들께서도 이토 코지 선생님의 연구 논문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측 토론자로서 한문종 선생님께서 토론에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한 선생님께서는 이 주제에 관해서 토론을 하시기 전에 지난번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자료의 제시에 대해서 요청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자료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드리고 토론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한문종 선생님에게 발언을 부탁드립니다.

한문종: 예 한문종입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 지난 12월에 발표한 지적 사항, 특히 자료 이용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누어 드린 자료는 제가 학위 논문을 준비하면서 1986년부터 작성해 온 자료입니다. 자료 1은 조선 건국부터 임진왜란 직전까지 조선에 도항한 통교 왜인의 통교 기록 4800여 건을 조선왕조실록을 토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 자료에는 통교 일시, 통교자의 지역, 통교자의 관직, 인명, 그리고 사송왜인의 성명, 진상품과 구청품, 또 회사품, 서계, 도서, 문인의 소지, 위조 여부, 세견선 정약의 여부 등 통교왜인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 2는 자료 1을 지역별, 인명별로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예, 또한 이 자료는 2003년에 출시된 원문 조선왕조실록에서 일본 관련 사항, 일본 인명이나 지명에 표점 작업을 하면서 계속 보완한 것입니다. 지난 12월에 제가 발표할 때 이용한 자료는 기본적으로 이 자료에 근거하였다는 점을 밝히고

자 합니다. 따라서 이토 선생님의 자료를 인용 사료를 발표문에 반영하지 않았
었습니다. 그러나 이토 선생님이 인용한 사료 중에서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자료, 그리고 제가 기존의 논문에서 인용하지 않은 자료는 확인해서 논문을 수
정할 때, 주로 처리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광 : 자료에 대한 해명이 있었고 곧 이어가지고서, 지금 이토 선생님의 논문에 관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이 질문, 토론에 참여할 수 있
도록 간략하게 줄여가지고, 요령 있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종 : 그리고 지금 나눠 드린 자료는 저한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광 : 자, 질문을 시작을 해 주세요.

田代 : 저어, 저도 방대한 사료를 취급하고 있고, 이와 같은 자료를 만들 때에는 많은
사료를 가지고 표를 작성합니다. 그 가운데서 발견한 것이 몇 가지 있겠지만, 자
기가 최초로 발견했느냐 아니냐 하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이미 발견된 내용은
유감스럽지만 그 전에 발표한, 처음에 발표한 사람의 논문을 기재하지 않으면
역시 안된다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학문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자세히 보고
있더라도 먼저 1년이라도 2년이라도 아무래도 빨리 논문을 쓴 사람이 지적하고
있는 한 그 사람의 논문을 지적해주지 않으면 역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어,
이토 씨가 전번에 지적한 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조광 : 예, 지금 다시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한문종 선생님이 간략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한문종 : 네 다시로 선생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물론 선학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자료까지 연구 성과
에 반영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광 : 시간 절약을 위해서 질문으로 곧바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종 :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토 선생님의 논문은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서 통교자의 진위 여부와 실체를 파악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발표한 논문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또 제가 보충을 요하는 문제 일곱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어 발표문 12~16쪽에 일본국왕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1441년 막부장군의 명령을 받고 파견된 일본 국왕사가 막부 장군의 사전 승인도 받지 않고 하카다 상인과 결탁해서 진상품을 바꿔치기하고 또, 장군의 국서를 마음대로 개찬하는 일이 막부 장군의 묵인 없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러한 일이 가능하다면, 당시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최고 권력자인 막부 장군이 가지는 존재의 의미와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막부 장군의 문서나 국서를 개작하는 일에 대한 처벌 조항이나 법령이 당시 일본에는 있었는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결론 부분에서 위사를 동아시아의 통교권 안에서 행해진 보편적인 현상으로 파악하면서 두 가지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는 남북조의 혼란기에 나타나는 일회성 현상이거나 매우 특이한 사례에 불과합니다. 그에 비해서 朝日관계에서 일본의 통교위반자, 즉 위사는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불법적이며 대규모로 행하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에서 위사를 동아시아 국가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외교 현상으로 결론지은 것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설령 이러한 외교 형태가 동아시아 국가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통교자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행한 불법과 탈법적인 행위는 절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토 선생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伊藤 : 네, 지적 감사합니다.

조광 : 지금 질문이 모두 7개라고 했는데... 두 개가 나왔습니다.

吉田 : 다른 토론자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伊藤 : 저, 단도직입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군의 허가가 없어도 국서개찬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군의 외교에 대한, 저어, 뭐가 있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외교권이, 저, 외교권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참고문헌에 제시했습니다. 1988년에 쓰여진 橋本雄 씨의 논문을 숙독해 주시면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벌이 있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처벌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 저어, 이어서 그, 위사는 보편화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입니다. 저, 이것 말입니다, 저어, 그, 결론을 뒤집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 위사, 거것으로 통행한다는 수단은 동아시아 통교권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보편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조일통교의 경우, 그것이 대규모, 항상적으로 행해진 점은 특징적이라고 저도 보고에서 서술하였습니다. 아, 그리고 그, 남북조 시대에 대해서 지적 하셨습니다만, 그러면 오히라트의 사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한문종 : 예, 사료에 인용한 1442년의 에센의 견사를 칭하는 사신에 대해서 명에서 의심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센의 사절이 위사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시기를 전후해서 에센의 사절이나 오히라트의 사절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를 저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조광 : 예, 지금 이토 코지선생님 입장에서 계속 말을 주고받으면 효율적이겠지만, 이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일단 한문종 선생님의 질문을 다 듣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종 : 예, 세 번째 질문은 위사의 시대라고 하는 표현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나누어 드린 자료에 의하면 일본에서 조선에 도향한 통교자의 통교건수는 48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중 이토 선생님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위사라고 판단되는 수가 구체적으로 얼마쯤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위사 보다는 진사가 훨씬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대를 위사의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만약 위사의 시대라는 표현을 한다면, 다수의 진사는 당시 조일관계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일본에서 위사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사가 조선시대 한일관계에서 갖는 의의와 역할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조선시대 조일관계 연구에서 통교왜인의 진위를 파악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교왜인의 진위는 일본의 국내 문제지, 조선정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의 경우에는 조선 정부가 요구하는 외교 의례와 형식, 즉 서계·도서·문인의 소지, 진헌과 회사라고 하는 형식을 갖추었으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통교자로 간주하여 접대하였습니다. 결국 조선에서는 양국간의 외교관계에서 의례와 형식을

가장 중요시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와 국가간의 외교관계는 상호 신뢰를 전제하여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사는 국가와 국가간의 상호신뢰를 무너뜨리고 양국의 외교관계를 파괴하는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외교 행위였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토 선생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조광 : 자, 이 지금 질문이 너무 길어서 사회자의 직권으로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두개 문제는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시간이 25분입니다. 11시 25분인데, 간략하게만 대답을 해 주시면, 아마 다른 사람의 질문을 통해서도 선생님의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伊藤 : 저, 그러면 시간도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표현에 대한 의문점, 뭐 「위사의 시대」라고 부르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그, 4,800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통교 횟수가 아니라 통교 내용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은 상당한 비율로 위사가 혼입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사가 많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吉田 : 잠깐, 잠깐만요, 스톱. 중요한 부분이 지금 하나 빠졌습니다. 상당수가 위사였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伊藤 : 진사가 많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橋本雄 씨, 長節子 씨 두 분의 논문을 비판하겠다는 말씀인가요. 혹시 진사가 많았다고 하실 거라면 이 두 논문을 논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위사연구를 하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오후에 보고하실 손승철 선생님이 논문의 결론부분에서 「우선 첫째, 양국 관계의 기본적인 역사사실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충실하게, 중세 일조관계사의 역사적인 실태를 해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조선사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결론부분에서 경제적 문제와 정치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광 : 지금 이토 선생님이 대답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한문중 선생님께서 또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데, 한문중 선생님은 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은 이 질문을 하나씩만 해 주세요. 박재광 선생님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광 : 박재광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필자가 결론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애매모호한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용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맺음말에서 ‘조선 통교를 강하게 지향한 일본측 통교자는 조선측의 통교 통제를 합법적으로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위사 통교라고 하는 통교 형태를 나왔던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밑에 가서는 ‘특히 조선측의 통교 통제에 대한 비장의 카드로써 문인을 중시했다는 것은, 꼭 가가지고서 위사 통교를 스스로 제도에 의해서 보장해 버린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합법적인 회피수단, 어떻게 보면 국가간의 통교의 기본 원칙상에서는 상호신뢰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쪽의 규제를 그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그 규제에 맞추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추구를 위해서 名義 許稱이라던가, 서계위조, 그것 자체를 과연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위사 자체의 僞자에도 어떻게 보면 거짓이라고 하는 비합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과연 합법적으로 표현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조선측에 있어서는 실제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일부 묵인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외교정책상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일 뿐, 그걸 제도적으로 보장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 : 네, 여기에 대해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伊藤 : 예, 그러면 간단하게. 네, 물론 그, 사기와 같은 행위는 합법이 아닙니다만 제가 말하는 합법이란 조선정부에서 본 합법, 이른바 한문중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규칙, 조선측의 규칙에 따른, 그런 의미에서의 합법입니다.

조광 : 박 선생님 대답을 하시려고 하는데, 일단 문제제기로 그치고, 다음, 누가 장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까?

장순순 : 저는 자그마하고 간단한, 간단하게 두 가지 하겠습니다. 일본측 발표문에서요. 페이지 32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조선측의 대일 遣使파견의 중단이, 일본측에 사절을 파견하는 것의 중단이, 내용상 인용문에, 조선측의 의식 문제도 있지 만이라고 하는 단서를 다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조선측의 인식 문제는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伊藤 : 네, 저, 알겠습니다. 그, 이것은 주석에서 쓴 하시모토 논문의 68페이지를 보면 가장 빠른데요, 이것은 요컨대 조선의 관인이 일본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그다지 무리하게 위협을 무릅쓰고까지 가고 싶지 않았다는, 그런 의식입니다. 네,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한문중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서 아직 대답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사통교를 보증하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가공인물인 심처왜인 명의에 대해서 세건선 계약을 맺어버렸으면 그것은 보증한 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六反田 : 저, 간단하게 말하면, 간단하게 번역하려면 《해동제국기》 중에서, 요컨대 실제로는 없는 명의가 일본에서 오는 사절로서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버리면 그것은 제도적으로 조선왕조가, 실제로는 없는 가공명의를 보증한 일이 되지 않는가요. 그것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은 없는데, 그 이름의 사절이라는 것이 그 조선의 제도 속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 세건선 계약이라는 것을 맺었을 때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있다 없다는 관계없이 조선측에서 제도적으로 보증해 버린 일이 되지 않느냐는 대답입니다.

조광 :그러면 장 선생님.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순 : 맺음말에서 초반부에 위사 출현의 원인에 대해서 이토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원인을 조선측에서만 찾고 있으시거든요. ‘세종기 이후 그 경제적인 부담 증대의 회피의 목적으로 서계나 문인에 의한 대일 통교 통제책을 도입해 서서히 일본측 통교자들의 조선 통교 무역을 억제했던 것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원인이, 위사 출현의 원인이 위사라고 하는 것이, 한일 양국의 역사 속에서 출현하는 것이고, 또 일본쪽에서 출현한 것인 만큼, 일본 내에 있어서의 위사 출현의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伊藤 : 조선이 통교자를 규제하지 않으면 일본측은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었으니까, 그, 감히 위사라는 답답한 수단을 쓸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장순순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 국내에서 예를 들면, 위사, 사절의 파견은,

외교적인 문제인데, 일본 국내 정부의 중앙 정권의 지방 통제의 약화 이런 부분이 언급될 수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조광 : 예, 위사 발생의 일본측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걸 논의하다가 다른 분들에게 질문 기회가 없으니까, 대답을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吉田 : 중요한 점을 확인하겠습니다. 약해진 것은 지방정권, 중앙정권,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장순순 : 중앙정권의 지방 통제의 약화.

조광 : 홍 선생님 그냥 질문해 주시지요.

홍성덕 : 저는 아주, 사소한 질문이, 질문이라기보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가 저희 연구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자료들이 양국의 학자들, 그리고 교과서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배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吉田 : 아닙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하면 회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홍성덕 : 때문에 논문 제목이라든지, 내부적인 표현을 쓸 때, 특히 저희가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느꼈던 문제입니다만, 시기 구분이 조선과 일본이 좀 다릅니다. 때문에 일본측 연구자들이 중세라는 표현을 쓸 경우에 한국쪽에서 잘못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5세기라든지, 서기 표현을 도입하는 게 어떨지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광 : 대답해 주십시오.

伊藤 : 예, 홍 선생님 의견 감사합니다. 뭐 시기구분에 대해서는 금후 검토하고, 제목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 선생님이, 중앙정권이 약해진 것이 원인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시기는요, 일본의 중앙정권은 계속 약했다고 할까, 조선왕조와는 달랐습니다.

조광 : 예, 그러면 손승철 선생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손승철 :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토 선생님 논문이 하카다 상인의 역할을 부각시켰고, 또 조선의 대일 통교책이 일본의 위사 파견을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하는 지적은 앞으로 양국 위사 연구에 있어서 상당히 참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그 조선 대국관에 관한 문제인데, 논문 중에 국서에 ‘황제’, ‘폐하’ 등의 용어가 있으면, 위사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파견된 사절에게 실제로 조선 대국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게 좀 궁금해지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용어를 쓰는 것은 위사들 자신이기 때문에 그 용어를 써 가지고 갔을 때, 조선에서 그런 식으로 조선 국왕이 황제나 폐하처럼 행동을 해도 받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그렇다면 즉, 대국관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결론에서 위사의 존재가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썼습니다. 1443년 이래 위사의 존재가 양국관계를 일본의 일반적인 통교상태로 만들었고, 결국 그것이 朝日관계를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이라고 하는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고 갔다. 또 위사 시대를 17세기 전반기까지 설정을 함으로 해서, 위사에 의해 다시 양국의 국교가 재개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실증적인 연구는 높이 평가를 하지만, 만약에 이와 같이 양국의 외교가 위사라고 하는 그런 외교적인 사기에 의해서 외교가 전개되었다고 한다면, 당시 일본의 외교의 어떤 정체성, 일본 국가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지를 묻고 싶습니다.

조광 : 대답을 해 주십시오.

伊藤 : 네에, 감사합니다. 우선 조선대국관에 대해서입니다만, 사자가 조선대국관을 가지고 있었느냐 없었느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단으로서의 조선대국관은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에게 아첨하기 위한.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조선국왕 중에서, 예를 들어 세조 같은 경우는 스스로 황제를 표방하는 듯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문헌에서 쓴 桑野 씨의 논문 등이 이와 같은 의례적인 면에서 고찰하고 있어서 이것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정체성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단 대개 제가 고찰한 시기는 일본에 강력한 중앙정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저, 그러니까 확일

적일 외교가 동아시아 제국에 대해 행해지지 않았다는 점이 하나의, 고찰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광 : 그럼, 정구복 선생님 질문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 : 이토 선생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실증에 있어서는 훌륭한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사는 양국의 관계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는 양국의 자료를 인용했지만, 자료의 해석에 있어서는 일본측의 시각에 충실할 뿐 조선측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한국측 연구 성과가 전혀 주석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에 있어서도 일본중심적인 역사관이 크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외교사는 양국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아까 홍성덕 선생님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제목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에는 15, 16세기의 日朝, 또는 朝日관계에 보이는 일본 위사의 성격이라고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日朝관계에 있어서 위사라고 하는 것은 조선측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양국 외교사에 있어서 하나의 시대로 설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伊藤 : 지금 마지막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도 그, 제목에 있어서, 다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사료해석을 하는데 일본사보다 조선사에 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정구복 : 이 시기의 日朝관계에 대한 연구는 물론 위사에 관해서는 한국측의 연구 성과가 없겠지만, 日朝관계의 정립에 대한 한국측의 연구 성과가 전혀 없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손승철 : 그걸 무시한 게 아니라, 그런 구체적인 연구 성과물을 제시를 해주면, 앞으로 반영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吉田 : 좋습니까, 저어, 이것은 구체적으로 선생님에 대한 답변인데요, 이토 선생님이 한국측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특히 사료해석에 있어서. 그러한 말씀이었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료인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광 : 제가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선행 연구를 충실히 반영을 해야 하지 않은가, 이것은 연구자의 기본적인 자세다 라고 하는 것을 정구복 선생님께서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선행 연구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얘기해 주셨는데, 정 선생님께서 한마디만 더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구복 : 이 시기의 외교 관계는 실은 조선측에서 입장에서 해석을 하자면, 조선과 명과의 관계와는 달리, 경국대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선과 여진, 또는 조선과 왜의 교린관계라고 하는 점을 전혀 해석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조광 :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아셨을 거니까 그냥 제가 질문을 하는 걸로 하지요. 대답을 꼭 하시겠습니까?

伊藤 : 네, 확실히 여진에 대해서 빠져 있다는 것은 맞는데요, 저는 어디까지나 일본사 연구자로서의 입장에서 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사연구가 한국측에서는 적다는 현상을 생각해 보면, 한국측의 시점에서 한국분이 위사연구를 더 깊이 있게 고찰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조광 : 예, 감사합니다. 다시로 선생님 질문...

田代 : 두 가지 질문. 그, 한국의 선생님들이 위사의 시대라는 것을 더 이해하실 수 있게끔 일본사 연구자라고 해도 역시 공부해야 합니다. 혹은 밝혀야 하는 문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조선측에서 통제할 수 없었다는 것을 더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 그러니까 문인제도라는 것은 여권이죠, 대마에서 갖는. 그것을 체크하는 기능이 조선측에 없었다. 왜 없는지. 전혀 설치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설치했는데 관리들이 하지 않았는지. 왜 거짓의 사절이 빠져나가서 왕성에 올라가서 마치 진짜 사절단처럼 당당히 돌아올 수 있는지 하는 점을 역시 위사의 움직임 속에서 찾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는 그, 29페이지에 있는 「일원적, 다원적」이

라는 말에 대한 이토씨의 생각인데요, 이 「일원적, 다원적」이라는 말은 중국의 대외기준, 조선의 대외기준에 대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아무리 위사가 횡행하더라도 조선측의 대외기준, 즉 다원적인 관계는 변하지 않았습시다. 에도시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인을 받은 것은 대마 종씨. 다원적입니다. 일본국왕사만이 아니라 대마 종씨도 있다. 이 다원적인 관계는 같습니다. 계속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일원적이라든가 다원적이라든가 하는 말은 중국의, 혹은 조선의 대외기준을 나타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본측에서 멋대로 망쳐간다. 그러니까 다원적 혹은 일원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새로운 말을 만들어야 합니다.

손승철 :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하는데, 다원적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조선 전기나 조선 후기나 조선의 입장에서는 일본측에 다원적이었다. 그게 변화가 없었다. 그건 조선의 입장인니까, 일본측의 새로운 용어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田代 : 그래서 그것을 같은 용어로 써 버리면 저,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말, 즉 重層的이라든가 單一的이라든가, 제가 저서에서 쓴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새로운 말을 생각해 봐야 해요. 같은 수준에서 설명해서는 안돼요.

조광 : 예, 다시로 선생님 감사합니다. 코멘트 하신 거니까, 별도의 대답을 안해도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좀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제가 드린 질문지를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사의 개념이 아직도 확정이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위사라고 할 때는 조선이 그들을 인식한 걸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위사로 조선에 왔던 사람 자신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했느냐, self-recognition 문제가 되겠죠. self-recognition 그 자체도 같이 감안한 용어가 되어야 할 텐데, 아마도 위사들이 조선에 와서 자기 집에 돌아간 다음에 애들한테 나 조선에 가짜 사신노릇 하고 왔다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장사하고 왔다고 했지, 그렇다면 위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사의 유형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금 위사의 유형을 아홉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 첫 번째의 경우에는 위사로 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일반적인 사신에 기생하는 상인의 존재니까 그건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동일한 기준 내지는 좀더 적절한 용어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수정 의견을 두 개를 냈습니다. 첫 번째는 통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통교를 다 붙여 왔다가 나중에 뺀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위사의 결과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는데, 국가 재정을 극도로 압박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국가 재정을 극도로 압박했다는 구체적 자료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국가 재정이 아니라, 경상도 재정이고, 더 좁게 하자면 東萊府 재정일 겁니다. 그 점을 국가 재정으로 확대해 가지고 생각하는 게 가능할는지요.

伊藤 : 저어, 저, 말씀하신 대로, 그, 경상도의 재정을 말하는 겁니다, 네.

조광 : 예, 국가와 조선왕조의 경우에, 국내의 경우는 중앙 정부지만, 지방 정부의 경우에는 사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갈 때, 국가 재정으로 표현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혹시 일본측 연구자 분들께서 코멘트 해 주시거나 그럴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伊藤 : 네, 저어, 뭐 그, 국가 재정을 어느 정도 압박했느냐 하는 구체적인 사료를 지금은 명시할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조선정부가 세종대에 잇달아 엄한 통행통제를 내세운 배경에는 역시, 그, 왜인 접대 비용의 증가라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혹시 사료가 있으면 수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六反田 : 한마디 말해도 됩니까? 좋습니까? 안됩니까?

조광 : 예 일본측, 六反田...

六反田 : 저어, 지금 나온 재정의 문젠데요, 당시 뭘 가지고 국가재정이라고 했고, 뭘 가지고 경상도 재정이라고 했는지는 오늘과 같은 관점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본래 중앙에 상납해야 할, 중앙에 가져가야 할 田稅를 경상도의 경우 왜인 접대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져가지 않고, 부산에 다 모아서 쓰고 있었다고요. 이에 관한 사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료를 제시하면 되는 일이었는데요, 단 국가재정이라는 말을 쉽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온다는 것, 좀 더 신중히 해 주십시오.

조광 : 코멘트를 해 주셨는데, 또 다른 코멘트나 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吉田 : 저어, 이토선생님에 대한, 저는 일본인으로서 한국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의입니다. 아까 전에 한국측의 선생님에서부터 비판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에서 본 일본과 조선의 외교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에 관해서 이토선생님의 답변 중에서, 아니 조선측에서도 정치적,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결국 외교라는 것은 국내의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성이란 단순히, 아까 세종의 예가 나왔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조선이라는 국가, 정부에 있어서 필요한 정치, 경제적인 문제였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 견해를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영향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이 중심, 일본이 주체이고 조선이 객체가 됩니다. 그런데 정치나 외교는 양쪽이 주체가 되거든요. 그 때 조선측의 정치적, 경제적인 정책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 의도, 이것이 없으면 외교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부터 의견이 나와 있듯이 위사라는 존재가 이 시대를 움직이고 있었다면 조선측에서 왜 그것을 이용하려고 했는지. 위사라고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영향뿐만이 아니라 조선측의 주체성이 있습니다. 그 주체성이 무엇이었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가르쳐 주십시오.

조광 : 요네타니 선생님 혹시 발언하실 것 있습니까?

米谷 : 아, 그러면 하나만. 지금 요시다 선생님의 말씀과 관계해서, 왜 위사와 같은 것이 횡횡해 버렸는지, 조선측에서 사실상 받아들이고 있는 그 이유인데요, 그것은 결국 외국인의 내조입니다. 외국인의 내조가 왕권을 莊嚴化, 왕권을 장식하는, 왕권의 권위를 높이는, 의식이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이 일본과 조선의 아주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는요, 외국이라는 것은 안 왔으면 좋겠다는 존재. 豊臣秀吉 이전은 전혀 달라서요, 豊臣秀吉 이전에는 외국인은 오지 말라고 배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豊臣秀吉 이후는 오히려 조선과 같이 찾아오는 외국인을 조공자로 가정해서, 그것으로 豊臣정권이나 德川정권을 장식하는 요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전의 일본과 조선에 있어서는 역시 그 의식이 전혀 다릅니다. 그것을 좀 강조해서, 그것이 왜 위사가 횡횡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광 : 예, 요시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吉田 : 그 문제를 15세기부터 16세기, 조선통신사 문제까지 똑같이 설명할 수 있는지, 역사적으로는 아주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어 세조 때에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이후의 국왕에 대해서도 모두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지. 가장 크게 누락된 부분은 역시 아까 나온 바와 같이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일본에서 본 조선이 아니라. 조선은 동아시아 속에서 일본과도 중국과도 류큐와도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들 속에서, 그러면 일본과 조선과의 관계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점을 기초에 두고, 그러면 조선측이 일본을 외교정책상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것은 어떤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러한 점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조광 : 자,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간을 보니까, 제가 사회를 지루하게 봐서 25분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25분이 초과가 되서, 일단 오전 발표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발표를 해 주신 이토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토론이 이토 선생님의 논문을 더 완벽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끝).